
복지교육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복 지 과



(김포복지재단 운영) (P - 9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 사업규모 : 김포복지재단 운영비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관의 정관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통합적 복지허브 체계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227,181	1,262,243	1,190,380	71,863	35,062	
국 비						
도 비						
시 비	1,227,181	1,262,243	1,190,380	71,863	35,062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김포복지재단 사업 활성화 및 운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보조금의 교부)
근거내용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부금(품) 사업확대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 사랑의온도탑 보수 및 재단 내 포토존 설치
- 김포복지맵 정보보완 및 기능 추가

□ 사업비 산출내역 : 별첨자료 참조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01. ~ 2020. 12. : 연합모금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 사회복지인식개선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원사업 등 실시
- 2020. 12. ~ 2021. 01. : 집중모금사업 「62일간의 나눔 릴레이」 실시
- 2021. 01. ~ 2021. 12. : 지역나눔문화 활성화사업 복지그물망사업 사회복지인식개선사업 및 민간협력사업 등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취약계층지원사업 : 65,000천원(복지시설 227개소(누적), 긴급지원 53가구) -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지원사업 : 6,876천원(12건, 896명) -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지원사업 : 5,000천원(개인 3명, 기관 4개소) - 사회복지종사자 문화나눔사업 : 2,640천원(14건, 279명) -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 2,000천원(MOU협약 4건, 아이디어 나눔UCC 공모전 2건) - 복지시설 컨설팅 : 6,000천원(노무 10개소, 홍보 1개소) -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 14,000천원(37개소) - 복지인식향상교육 : 10,000천원(12건, 2,268명)	
2020년	- 취약계층지원사업 : 84,360천원(복지시설 274개소(누적), 긴급지원 75가구) -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지원사업 : 11,310천원(15건) -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지원사업 : 6,268천원(개인 5명, 기관 4개소) - 사회복지종사자 문화나눔사업 : 2,991천원(18회) -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 8,380천원(MOU협약 10건 복지네트워크사업 진행 중 아이디어 나눔UCC 웹툰 공모전) - 복지시설 컨설팅 : 12,000천원(노무, 회계, 홍보 13건) -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 17,000천원(프로그램지원사업 2곳) - 복지인식향상교육 : 14,800천원(13건)	
2021년	-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지원사업 : 526천원(2회) - 취약계층지원(명절지원사업) : 31,150천원 140개소 / 1,108명지원 - 맞춤형행복나눔지원 : 8,620천원 / 22가구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29,825	1,031,530	-	98,295	
2020년	1,227,181	1,166,429	-	60,751	
2021년	1,190,380	825,624		364,756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영란	담당자	행정7급 최규현	전화	2616
-----	-----	------------	-----	----------	----	------

[별첨 1.]

2021년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천원)

구분	항목	전년도예산액(A)	2021년 본예산(B)	2021년 1회추경 요구액(C)	증△감 (B+C)-(A)
총 계		1,227,181	1,190,380	71,863	35,062
인건비	소계	524,662	566,384	-	41,722
인건비	기본급	335,608	354,114	-	18,506
	제수당	143,009	153,917	-	10,908
	퇴직급여	46,045	58,353	-	12,308
운영경비	소계	351,407	274,688	8,525	△68,194
운영비	복리후생비	107,252	115,597	-	8,345
	여비	9,720	10,800	-	1,080
	공공요금 및 제세	10,000	10,000	-	-
	수도광열비	6,240	6,240	-	-
	소모품비	8,560	12,402	-	3,842
	도서인쇄비	6,650	7,888	-	1,238
	지급임차료	5,951	7,259	-	1,308
	수선유지비	20,275	23,734	-	3,459
	차량유지비	4,800	4,800	-	-
	보험료	1,900	1,900	-	-
	지급수수료	13,885	27,600	-	13,715
	업무추진비	4,750	7,500	-	2,750
	관서업무비	2,679	2,820	-	141
	교육훈련비	4,500	2,820	-	△1,680
	회의운영비	10,000	10,000	-	-
	보상금	2,000	2,000	-	-
	시설비	49,000	-	8,525	△40,475
	자산취득비	83,245	21,328	-	△61,917
사업경비	소계	302,520	298,812	63,338	59,630
사업비	행사홍보비	25,410	18,832	5,000	△1,578
	복지정책 연구·포럼	31,000	37,000	-	6,000
	지역나눔문화 활성화 사업	48,300	69,340	19,838	40,878
	복지그물망 지원사업	114,200	100,560	-	△13,640
	사회복지 인식개선사업	14,800	23,384	-	8,584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지원사업	11,310	15,456	-	4,146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지원사업	19,500	18,040	-	△1,460
	사회복지 시설지원 (복지시설컨설팅)	29,000	13,200	-	△15,800
	민관협력사업(행복 복지 공감아이디어)	9,000	3,000	38,500	32,500
성과급	소계	48,592	50,496	-	1,904
성과급	성과급	48,592	50,496	-	1,904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P - 9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10. ○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02,503
- 사업규모 : 연면적 7,000㎡(지하2층 ~ 지상4층)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북부권 5개 읍·면 문화 복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확충하여, 지역복지 욕구 충족 및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476,000	3,521,000	2,020,000	1,501,000	1,045,000	
국 비						
도 비						
시 비	2,476,000	3,521,000	2,020,000	1,501,000	1,045,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착공에 따른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정별 공사비 필요
- 건설기술용역 평가 심사비용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근거내용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2019.3월	-	2019.3월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북부권 주민들의 복지욕구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 구축
-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업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 예산확보 절실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계	=	1,501,000	
부분권 제2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201-01 사무관리비	· 건설기술용역평가 심사비 =	1,000	
	401-01 시설비	· 공사비(공사기간 18개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노유자시설) - 건축 : 1,257,257원/㎡ × 7,000㎡ - 기계 : 225,062원/㎡ × 7,000㎡ - 전기 : 218,262원/㎡ × 7,000㎡ - 통신 : 163,751원/㎡ × 7,000㎡ - 소방 : 105,896원/㎡ × 7,000㎡ - 조경 및 토목 : 632,000원/㎡ × 7,000㎡ ※공사 계약 및 착공에 따른 차수별 공사금액 =	1,50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4,648,000	6,435,000	3,521,000	2,020,000	1,501,000	14,692,000	
공 정 별	설계비	850,000	850,000				
	부지매입비	3,000,000	3,000,000				
	공사비	18,213,000		3,521,000	2,020,000	1,501,000	14,692,000
	감리비	2,400,000	2,400,000				
	부대비	185,000	185,00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09. ~ 2018. 11. : 기본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03. : 경기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완료
- 2019. 09. ~ 2018. 11.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및 설계공모
- 2020. 02. ~ 2020. 03.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설계용역 착수 및 보고회 개최
- 2020. 04. ~ 2020. 06. : 부지 경계측량 실시, BF예비인증 착수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 2020. 08. ~ 2020. 11. : 설계 경제성검토용역(VE) 실시 및 시공사 입찰공고
- 2021. 01. ~ 2021. 02. :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착공
- 2022. 10.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 3 경기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완료 - 2019. 9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 2019. 11 설계공모	
2020년	- 2020. 2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계약 - 2020. 3 설계용역착수(지반조사 포함) 및 착수보고회 개최 - 2020. 4 부지 경계측량 실시 및 BF예비인증 착수 - 2020. 4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 2020. 6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체결 - 2020. 10 실시설계 경제성검토용역(VE) 실시 - 2020. 11 시공사 입찰공고	
2021년	- 2021. 1 설계용역 준공 및 건축허가 완료 - 2021. 2 공사착공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959,000	1,597,375	2,361,625	-	
2020년	4,837,625	2,576,365	2,000,000	261,260	
2021년	4,281,260	271,657		4,009,603	03.31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p>위치도 10,000 : 1 이상</p>	
<p>현장사진</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영란	담당자	행정7급 최규현	전화	2616
-----	-----	------------	-----	----------	----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P - 95)

□ 지방보조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03. ~ 2021. 12.
- 공모여부 : 공모
- 보조사업자 :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대표자 : 조선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여건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노인 및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한의학 방문건강관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50,000	62,000	0	62,000	12,000	
국 비	25,000	31,000	0	31,000	6,000	
시 비	25,000	31,000	0	31,000	6,000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지역여건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선정
-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게 노인 및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의학 돌봄 서비스 제공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3조
근거내용	제3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경기도, 시·군·구 위탁사업 3. 국제교류 및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 및 교통 취약지역에 찾아가는 한의학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지역이 지역을 돌보는 문화 확산
-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총 계	계	국비	시비	
연계강화 사업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합 계	62,000	31,000	31,000	
		· 한의사 방문검진비 : 120,000원× 43명× 10회 =	51,600	25,800	25,800	
		· 한방치료 재료비 : 8,000원 × 43명× 10회 =	3,440	1,720	1,720	
		· 응급구호비 : 300,000원 × 15가구 =	4,500	2,250	2,250	
		· 회의 및 간담회 : 150,000원 × 4회 =	600	300	300	
		· 성과평가회 : 1,260,000원 × 1회 =	1,260	630	630	
		· 기타운영비 : 600,000원 =	600	300	3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2 : 공모신청 및 선정
- 2021. 04 : 민간협력 TF 구성 및 운영
- 2021. 05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2021. 05 : 서비스 실시(모니터링)
- 2021. 11 : 성과 평가
- 2021. 12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김포시 노인· 장애인 36명 찾아가는 한의약+복지 서비스 제공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50,000	41,972	-	8,028	
2021년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인우영	전화	2632
-----	-----	------------	-----	------------	----	------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P - 9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목적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년)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 기대효과 : 김포시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이 가능하고, 장기 공급대책을 모색하여 복지자원에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39,200	0	39,200	39,200	
국 비						
도 비	0	11,760	0	11,760	11,760	
시 비	0	27,440	0	27,440	27,44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전문적인 조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욕구 파악 가능
-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기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1항, 7항
근거내용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욕구 파악 및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 가능
-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후 대행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지역사회 보장조사 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지역사회보장조사 대행사업비 39,200,000원	= 39,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확정내시
- 2021.02. : 경기도 31개시·군 설명회
- 2021.03. : 조사항목 설계
- 2021.04. ~ 2021.10. :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 2021.11. ~ 2021.12. :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분석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해당없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영란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승현	전화	2619
-----	-----	------------	-----	------------	----	------

(보훈단체 지원) (P - 96)

□ 사업개요 (운영비)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6.25참전유공자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6.25참전유공자회 운영차량 노후화로 차량임차료 반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0,720	45,058	40,058	5,000	4,338	
국 비						
도 비						
시 비	40,720	45,058	40,058	5,000	4,338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운영차량 노후화로 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임차료 지원
 - 6.25참전유공자회 현재 운영차량(2010년식, 주행거리 : 179,476km)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가보훈기본법 등	제5조 등
근거내용	<p>■「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법적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p>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p> <p>■「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법적 단체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p> <p>■「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법적 단체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p> <p>■「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차량 지원(병원후송) 및 단체 행사 차량지원 (현충시설 관리 등)
- 차량 임차를 통한 기존 차량 수리비 과다 지출 예방
- 차량 구입 예산지출 예방 등 장기적 예산절감 도모
- 차량 노후화로 인한 잦은 문제 예방 등 안전운전 및 탑승자 안전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보훈단체 지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6.25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 차량임차료 5,000,000원 × 1대 =	5,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보조사업자 : 6.25참전유공자회 ○ 추진실적 : 보훈회원 관리 및 보훈단체 운영(인건비, 차량운영비, 공과금 등)	
2020년	○ 보조사업자 : 6.25참전유공자회 ○ 추진실적 : 보훈회원 관리 및 보훈단체 운영(인건비, 차량운영비, 공과금 등)	
2021년	○ 보조사업자 : 6.25참전유공자회 ○ 추진실적 : 보훈회원 관리 및 보훈단체 운영(인건비, 차량운영비, 공과금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1,183	41,183	-	0	
2020년	40,720	40,720	-	0	
2021년	40,058	21,529		18,529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영란	담당자	사회복지8급 홍동균	전화	2618
-----	-----	------------	-----	------------	----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P - 9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05. ○ 위 치 :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 사업규모 : 독립운동기념관 외벽 사인물 설치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념관을 찾는 내방 이용객의 편의 및 시설물 위치정보 극대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10,250	302,681	307,681	-5,000	92,431	
국 비						
도 비						
시 비	210,250	302,681	307,681	-5,000	92,431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독립운동기념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간판 개선
- 현재 여러 각도의 간판 미설치로 이용객의 시설물 위치 정보 부족
- 건물의 외관과 보색 균형이 맞게 설치 추진
-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예산 반납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근거내용	제1조(목적)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념관 도로방향으로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방문 유도
- 알루미늄 재질로 선명하여 효율적이고 시각적인 시설물 홍보 강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5,000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외벽 사인물 1식 8,000,000원	= 8,000	
		·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반납 13,000,000원	= -1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5. : 독립운동기념관 사인물 설치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관리	
2020년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관리	
2021년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관리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69,892	150,443		19,449	
2020년	210,250	175,685		34,565	
2021년	307,681	173,691		133,99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영란	담당자	행정7급 김지숙	전화	2617
-----	-----	------------	-----	----------	----	------

(생계급여) (P - 9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5,455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지원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1,653,800	23,201,000	23,073,000	128,000	1,547,200	
국 비	17,323,000	20,880,030	20,765,030	115,000	3,557,030	
도 비	2,165,400	1,624,484	1,615,484	9,000	-540,916	
시 비	2,165,400	696,486	692,486	4,000	-1,468,91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저소득층 신규 책정자 및 전입가구에 따른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
- 저소득층 책정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5,427가구→5,455가구)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근거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지원을 통해 기초생활 보장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생계급여 23,201,000,000원 - 23,073,000,000원	= 128,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 읍면동 생계급여 대상자 신규책정 및 변동 확인
- 매월 : 생계급여 지급(매월 20일 정기급여, 매월 말일 추가급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3,610가구 총19,073,487천원 지급	
2020년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4,085가구 총21,437,350천원 지급	
2021년	○ 생계급여 지급 : 매월 4,267가구 총5,876,255천원 지급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9,235,000	19,073,487		161,513	
2020년	21,653,800	21,437,350	-	216,450	
2021년	23,073,000	5,876,255		17,196,745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권성민	전화	2621
-----	-----	------------	-----	------------	----	------

(해산장제급여) (P - 9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99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71,760	162,700	163,200	-500	-9,060	
국 비	137,400	146,400	146,900	-500	9,000	
도 비	10,310	4,900	4,900	0	-5,410	
시 비	24,050	11,400	11,400	0	-12,65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제14조
근거내용	제13조(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것으로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출산 시 70만원 및 사망 시 80만원의 정액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해산장제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급여 162,700,000원 - 163,200,000원	= -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0. :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0.12.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수시 : 해산장제급여 신청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해산급여 : 10명 / 6,000천원 ○ 장제급여 : 176명 / 132,000천원	
2020년	○ 해산급여 : 6명 / 4,200천원 ○ 장제급여 : 208명 / 169,850천원	
2021년	○ 해산급여 : 5명 / 3,500천원 ○ 장제급여 : 67명 / 53,600천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43,201	138,000	-	5,201	
2020년	171,760	170,050	-	1,710	
2021년	163,200	57,100		106,10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9급 최윤영	전화	2624
-----	-----	------------	-----	------------	----	------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P - 97)

□ 지방보조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사)김포시나눔복지센터 김포푸드뱅크 대표자 : 이 우 배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소외계층에 기부식품 제공으로 민간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0,540	65,460	48,660	16,800	24,920	
시 비	40,540	62,660	48,660	14,000	22,120	
자부담	0	2,800	0	2,800	2,800	

□ 예산 증감사유

- 북변6구역 재정비로 인해 김포푸드뱅크 이전에 따른 임차료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
근거내용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부 사업 추진을 위한 임차료 지원으로 원활한 푸드뱅크 사업 운영

□ 2021년 사업비 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총 계	계	시비		자부담
		합 계	16,800	14,000	2,800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 지원단체 : (사)김포시나눔복지센터 - 사업내용 : 기부식품등 제공 - 산출근거 · 임차료 : 월 2,400,000원*7월	16,800	14,000	2,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3. : 세부 계획 수립
- 2021.05. : 사업장 이전
- 2021.06. ~ 2021.12 : 임차료 지원 및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보조사업자 : (사)김포시나눔복지센터 김포푸드뱅크 ○ 추진실적 - 접수건수 : 2,438건 / 접수금액 : 1,709,380천원 - 배부건수 : 132,528건 / 개인 1,410명 / 시설 64개소 / 배부금액 : 1,628,165천원	
2020년	○ 보조사업자 : (사)김포시나눔복지센터 김포푸드뱅크 ○ 추진실적 - 접수건수 : 2,192건 / 접수금액 : 1,339,912천원 - 배부건수 : 140,123건 / 개인 1,379명 / 시설 61개소 / 배부금액 : 1,776,258천원	
2021년	○ 보조사업자 : (사)김포시나눔복지센터 김포푸드뱅크 ○ 추진실적 - 접수건수 : 551건 / 접수금액 : 481,930천원 - 배부건수 : 22,622건 / 개인 920명 / 시설 61개소 / 배부금액 : 333,493천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8,760	38,760	-	0	
2020년	40,540	40,540	-	0	
2021년	48,660	24,330		24,33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담당자	행정7급 김은정	전화	2631
-----	-----	------------	-----	----------	----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P - 9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4개 읍면동, 280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지원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17,600	117,597	117,657	-60	-3	
국 비	82,320	82,318	82,360	-42	-2	
도 비	5,292	5,292	5,295	-3	0	
시 비	29,988	29,987	30,002	-15	-1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확정내시 반영분

□ 법적근거

근거법령	보건복지부「2021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근거내용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지침 (보건복지부)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다양한 복지 욕구를 지닌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보조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사업 추진 경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합 계	= 117,597	
	201-01 사무관리비	· 사례관리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20,000원 × 140가구 × 14개소 = 39,197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례관리대상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지원 560,000원 × 107가구 × 14개소 = 78,4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120가구 71,757천원)	
2020년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137가구 77,776천원)	
2021년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15가구 3,811천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9,200	108,062	-	1,138	
2020년	117,600	116,941	-	659	
2021년	117,657	9,009		108,648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담당자	복지7급 인우영	전화	2632
-----	-----	------------	-----	----------	----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P - 9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867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실직, 폐업, 질병 등 위기가구에 신속한 생계·의료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808,780	918,780	818,780	100,000	110,000	
국 비						
도 비	161,756	183,756	163,756	20,000	22,000	
시 비	647,024	735,024	655,024	80,000	88,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
- 당초 사업규모 772가구에서 867가구로 확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긴급복지 지원법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22조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법·제도 기준 초과 등으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위기 해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060,000원×867가구)-(1,060,000원×772가구) =	10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12. : 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667건, 351,150천원)	
2020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1,069건, 603,904천원)	
2021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1,078건, 587,487천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52,000	351,150	-	850	
2020년	808,780	603,904	-	204,876	
2021년	818,780	587,487		231,293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 팀장 홍지혜	담당자	행정8급 조유빈	전화	2634
-----	-----	-------------	-----	----------	----	------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P - 9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2,016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800,000	1,617,128	790,000	827,128	817,128	
국 비	400,000	808,564	395,000	413,564	408,564	
도 비	266,400	538,504	263,070	275,434	272,104	
시 비	133,600	270,060	131,930	138,130	136,46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본예산 대비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자 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금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4 -제28조의 5
근거내용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생활지원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지원비 지원 802,000원 × 2,016가구 (2인가구 14일 격리자) = 1,617,128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생활지원비 지원 : 1,021가구/3,041명 - 생활지원비 지급액 : 799,381천원(99.9%)	
2021년	- 생활지원비 지원 : 910가구/2,656명 - 생활지원비 지급액 : 766,041천원(97%)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800,000	799,381	-	619	
2021년	790,000	766,041	/	23,959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인우영	전화	2632
-----	-----	------------	-----	------------	----	------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 (P - 9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사회복지 명예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위기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협조를 이끌어 민관협력 강화기대
- 예산요구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8,615	33,450	0	33,450	14,835	
국 비						
도 비	5,580	10,035	0	10,035	4,455	
시 비	13,035	23,415	0	23,415	10,38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의 위기 이웃 발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민관협력)제1항,제3항
근거내용	제14조(민관협력)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위기 이웃 발굴 지원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협조 활성화
 - 기존 발굴체계의 활동을 독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비용 지원으로 발굴 체계 강화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단체로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 정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회의 수당 지급
 - ※ 사회복지명예 공무원 : 정기적인 활동 보다 행사 등 1회성 활동에 협력
 - 자발적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활동 장려 물품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33,450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 지원 161명 × 30,000원 × 4분기 =	19,320
	201-01 사무관리비	· 활동 홍보물품 구매 1,221명 × 11,570원 =	14,13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1 : 도비보조 사업 가내시
- 2021. 05 : 활동 장려물품 제작 및 배포
- 2021. 05 ~ 11 : 위기이웃 발굴 활동비 지급(분기별)
- 2021. 12 :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위기이웃 발굴 활동지원비 지급 : 1,660천원(104명) - 위기이웃 발굴 홍보물품 구매 : 14,588천원(1,221명)	
2021년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8,615	16,248	-	2,367	
2021년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영란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승현	전화	2619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사회복지7급 인우영		2632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P - 9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3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자립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587,400	1,506,700	1,524,400	-17,700	-80,700	
국 비	1,269,920	1,356,030	1,371,960	-15,930	86,110	
도 비	95,244	45,201	45,732	-531	-50,043	
시 비	222,236	105,469	106,708	-1,239	-116,767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확정 내시 감액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0조 제1항
근거내용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활근로 참여자의 인건비 등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시 직접수행 자활근로사업 212,300,000원 - 230,000,000원	=	-17,7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분기 : 자활센터 보조금 교부
- 매 월 : 자활급여 지급
- 수 시 : 자활근로 참여자 발굴 및 근무지 배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자활근로사업(연인원 : 924명 / 월평균 77명) - 연도말 참여 현황 / 시 10명 + 자활센터 67명	
2020년	○ 자활근로사업(연인원 : 1,104명 / 월평균 92명) - 연도말 참여 현황 / 시 13명 + 자활센터 79명	
2021년	○ 자활근로사업(연인원 : 345명 / 월평균 115명) - '21년 3월 참여 현황 / 시 13명 + 자활센터 102명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07,799	1,092,896	-	14,903	
2020년	1,587,400	1,468,538	-	118,862	
2021년	1,524,400	965,144		559,256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은혜	전화	2623
-----	-----	------------	-----	------------	----	------

(지역자활센터 임차료 등 지원) (P - 9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66,933	95,470	95,470	0	28,537	
국 비						
도 비						
시 비	66,933	95,470	95,470	0	28,537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이전대상지 결정에 따른 임차료 현실화(월8,050천원 → 월4,500천원)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비용(칸막이공사 등)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근거내용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활센터 사업장의 임차료 등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계		0	
지역자활센터 임차료 등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임차료 지원 54,000,000원 - 80,500,000원 =	-26,500	
		· 사업장 이전비용(이사비용, 부동산중계료 등) 18,470,000원 - 14,970,000원 =	3,500	
	401-01 시설비	- 칸막이, 출입문 공사 등 74,070원 × 270평 = 20,000,000원 - 작업장 콘센트 및 전기 설치 3,000,000원 =	2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3. : 임대인, 운송업자, 중개인 협의 및 세부 계획 수립
- 2021. 04. : 사업장 임대차 계약
- 2021. 05. : 사업장 이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총 면적 : 1,862.3㎡ (건물 718.75㎡/부지 499.55㎡/주차장 644㎡)	
2020년	○ 총 면적 : 1,862.3㎡ (건물 718.75㎡/부지 499.55㎡/주차장 644㎡)	
2021년	○ 총 면적 : 1,862.3㎡ (건물 718.75㎡/부지 499.55㎡/주차장 644㎡)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0,000	55,822	-	4,178	
2020년	66,933	60,846		6,087	
2021년	95,470	-		95,47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은혜	전화	2623
-----	-----	------------	-----	------------	----	------

(희망키움통장 II) (P - 9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8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 촉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68,800	190,200	225,700	-35,500	-78,600	
국 비	215,040	171,180	203,130	-31,950	-43,860	
도 비	16,128	5,706	6,771	-1,065	-10,422	
시 비	37,632	13,314	15,799	-2,485	-24,318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214명 → 185명)로 인한 예산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제1항
근거내용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근로·사업소득 있는 저소득 대상자의 본인적립금(10만원)에 대하여 1:1 비율로 매칭한 근로소득 장려금(10만원)을 적립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희망키움통장 II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유탁사업비	· 희망키움통장 II 190,200,000원 - 225,700,000원	= -35,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0. :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0.12.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2월, 5월, 8월, 10월 : 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 매월 23일~30일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희망키움통장II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230명	
2020년	○ 희망키움통장II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275명	
2021년	○ 희망키움통장II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58명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56,200	356,200	-	-	
2020년	268,800	268,800	-	-	
2021년	225,700	76,080		149,62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9급 최윤영	전화	2624
-----	-----	------------	-----	------------	----	------

(자활장려금) (P - 9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활근로 의욕 고취 및 자립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0,670	25,600	14,000	11,600	4,930	
국 비	16,900	23,040	12,600	10,440	6,140	
도 비	1,131	768	420	348	-363	
시 비	2,639	1,792	980	812	-847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장려금 대상자 증가(6명 → 11명)

□ 법적근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내용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활근로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대상자의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자활장려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자활참여에 대한 장려금 지급 25,600,000원 - 14,000,000원 =	11,600	자활참여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 월 : 자활장려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자활장려금 지원 - 연인원 기준 19명 - 지원액 15,201천원	
2020년	○ 자활장려금 지급 - 연인원 기준 22명 - 지원액 18,191천원	
2021년	○ 자활장려금 지급 - 연인원 기준 14명 - 지원액 7,540천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3,704	15,201	-	58,503	
2020년	20,670	18,191	-	2,479	
2021년	14,000	7,540		6,46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은혜	전화	2623
-----	-----	------------	-----	------------	----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P - 286)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질병·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 의료급여 재정절감 모색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26,226	129,226	126,626	2,600	3,000	
국 비	85,307	89,200	87,120	2,080	3,893	
도 비	14,929	15,610	15,246	364	681	
시 비	25,990	24,416	24,260	156	-1,57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5조 제2항
근거내용	제5조의2(사례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올바른 의료이용 안내,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집중관리 등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 인건비 지원 (무기계약직 3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4,300,000원 - 101,700,000원	= 2,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1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가내시
- 2020. 12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확정내시
- 매월 급여, 수당, 여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무기계약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2018년 4월 무기계약근로자2명 추가 채용)	
2020년	· 무기계약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	
2021년	· 무기계약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26,188	116,886	-	9,302	
2020년	126,226	119,893	-	6,332	
2021년	126,626	31,450		95,176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박명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미선	전화	2622
-----	-----	------------	-----	------------	----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교육청소년과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P - 10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5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걸포로 76
- 사업규모 : 진로체험지원센터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 및 직업선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성장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97,808	269,300	209,300	60,000	71,492	
국 비						
도 비						
시 비	197,808	269,300	209,300	60,000	71,492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청소년 진로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본예산 미편성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행사형 프로그램 형식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소규모 활동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 중학교 1학년 대상 - 자유학년제* 연계(23개 학교, 약4,800명)
 - * 자유학년제 : 중학교 1학년 1, 2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 2020년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4.3점 / 5점 척도)에 따른 지속적인 학교의 요청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진로교육법	제4조
근거내용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전문적인 진로체험과 멘토링, 직업정보제공 등의 기회제공을 위한 맞춤형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제공
- 안전하고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운영

- 기존의 집합·행사형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직업별 15명 내외의 소규모 활동 진행
- 창의융합분야, 인문분야, 예체능분야 등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체험 위주의 진로활동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계 =	60,000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 강사비 · 전문직업인 100,000원(2시간)*320회 = 32,000 ○ 운영비 · 재료비 5,000원*4,800명 = 24,000 · 방역물품 500원*5,000명 = 2,500 · 현수막 25,000원*40조 = 1,000 · 안내문자발송 500,000원 = 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수립
- 2021.02. : 진로체험지원센터 대행사업비 지급
- 2021.02. ~ 2021.11. : 연간 프로그램 운영
- 2021.12. : 정산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총사업비 : 185,568천원 - 사업내용 : 23개 프로그램 운영 (참여인원 : 53,958명)	
2020년	- 총사업비 : 197,808천원 - 사업내용 : 22개 프로그램 운영 (참여인원 : 37,341명)	
2021년	- 총사업비 : 209,300천원 - 사업내용 : 21개 프로그램 운영중 (참여인원 : 1,001명)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85,568	185,488	-	80	
2020년	197,808	185,959	-	11,849	
2021년	209,300	107,550		101,75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담당자	행정8급 안초롱	전화	2581
-----	--------	------------	-----	----------	----	------

(경계없는 마을학교 운영) (P - 10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5월 ~ 2021.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94개교
- 사업규모 : 2021년 평화담은 김포마을학교(51개 단체 101개 프로그램)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직접사업 확대를 통해 센터의 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교육사업 활성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330,000	-	330,000	330,000	
국 비						
도 비						
시 비	-	330,000	-	330,000	33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색있는 김포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안밖에서 마을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필요성 대두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센터의 기능 및 지원)
근거내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 프로그램 운영 및 이동수단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직접사업인 「경계없는 마을학교」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학교(학생)가 이음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마을프로그램 교육·체험 시 혁신교육지원센터가 강사비, 프로그램운영비, 재료비를 지급
- ※ 2021년 김포시 평화담은 마을학교 프로그램 : 51개 단체 101개(16개 체험터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계	330,000	
경계없는 마을학교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 경계없는 마을학교 운영 ○ 경계없는 마을학교 강사비 = 110,000 ○ 프로그램운영비, 재료비, 키트비 = 220,000		< 강사비 > *주강사: 최초 1시간 4만원, 추가 1시간 3만원 *보조강사 : 최초 1시간 3만원, 추가 1시간 3만원 (현장학습시 1일 최대 10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재료비, 키트비 > * 프로그램별 운영비, 재료비, 키트비 상이 * 프로그램운영비는 강사비와 중복 지원 불가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2. : 제1회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유·초·중고 대상 혁신사업 설명회 개최, 김포마을자원 대상 혁신사업 설명회 개최(온라인)
- 2021.03. : 김포혁신교육지구 시즌 III(2021년~2025년) 운영
- 2021.05. ~ 2021.12.: 2021년 경계없는 마을학교 운영
- 2021.06./ 2021.11. : 상·하반기 마을교육자원 역량강화 교육
- 2021.06./ 2021.09. : 상·하반기 혁신교육사업 학교대상 모니터링
- 2021.11. : 김포혁신교육지구 컨퍼런스 개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담당자	임기제마급 김은아	전화	3389
-----	--------	------------	-----	-----------	----	------

(소규모학교(대명초) 통학차량 교체 사업) (P - 10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03월 ~ 12월 ○ 위 치 : 대곶면 대곶로20번길 17(대명초)
- 사업규모 : 80,000천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화된 통학차량 교체로 안전한 등하교 여건 마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80,000	-	80,000	80,000	
국 비						
도 비						
시 비	-	80,000	-	80,000	8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버스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하고 현재 11년째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에 어려움이 많음. 고장 및 차량 노후화로 사고위험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
- 현재 통학버스는 19인승으로 등교 학생수 대비 좌석이 매우 부족해 29인승으로의 교체가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근거내용	김포시장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김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통학버스 교체 : 29인승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합 계	= 80,000
소규모학교 (대명초) 통학차량 교체 사업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버스 29인승 : 70,000,000원 × 1대 = 70,000 · 기본도장,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 3,000,000원 = 3,000 · 어린이 탑승차량 안전장치 구비 : 2,000,000원 = 2,000 · 보험료 등 : 5,000,000원 = 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3. ~ 12. : 통학차량 교체
- 2021.12. : 실적보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담당자	행정7급 지연정	전화	2568
-----	--------	------------	-----	----------	----	------

(소규모학교(개곡초) 통학차량 교체 사업) (P - 10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03월 ~ 12월
- 사업규모 : 80,000천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화된 통학차량 교체로 안전한 등하교 여건 마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80,000	-	80,000	80,000	
국 비						
도 비						
시 비	-	80,000	-	80,000	8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버스 내용연수(9년)가 경과하고 현재 12년째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에 어려움이 많음. 고장 및 차량 노후화로 사고위험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
- 학교 위치(도서벽지) 및 지리적 상황으로 학생 유치의 어려움이 있으며, 원거리에서 등하교하는 재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서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함.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교육경비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근거내용	김포시장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김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통학버스 교체 : 29인승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합 계	= 80,000
소규모학교 (개곡초) 통학차량 교체사업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버스 29인승 : 70,000,000원 × 1대 = 70,000 · 기본도장,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 3,000,000원 = 3,000 · 어린이 탑승차량 안전장치 구비 : 2,000,000원 = 2,000 · 보험료 등 : 5,000,000원 = 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3. ~ 12. : 통학차량 교체
- 2021.12. : 실적보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담당자	행정7급 지연정	전화	2568
-----	--------	------------	-----	----------	----	------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P - 10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03월 ~ 12월
- 사업규모 : 40,000천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670,950	692,575	652,575	40,000	21,625	
국 비						
도 비						
시 비	670,950	692,575	652,575	40,000	21,62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청의 기초자료 송부('20.8월)에 따라 본예산 기 수립함.
 - 사업량 8,701명 × 300천원 = 2,610,300천원(시 25% - 652,575천원 본예산 편성)
 - ※ 학생 수 산정 = '20.6.30.기준 초등6학년 및 중3학년 학생수 + 전입 등 증가예상학생수(경기도교육청 수요조사)
- '20.9월 개교한 향산중학교의 교복착용 확정 및 전입 등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추가 사업비 편성 사유 발생.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근거내용	제5조(지원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6호(지원방법 및 절차) ①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지원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0.9월 개교한 향산중학교는 교복착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정되어 수요조사 당시 제외되었으나, 향후 교복착용으로 학교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량 증가
- 전입학생 수 증가로 인한 추가 사업비 편성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공 통		합 계	40,000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약 533명 × 300,000원 × 25% =	4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3. ~ 12. :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급 (시 → 학교)
- 2022.01. ~ 02. :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지원대상 : 중학교 신입생 4,280명 - 지원금액 : 323,092천원	
2020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신입생 8,951명(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1) - 지원금액 : 670,950천원	
2021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신입생 8,687명(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특수학교 1) - 지원금액 : 651,525천원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26,325	323,092	-	3,233	
2020년	670,950	670,950	-	0	
2021년	652,575	651,525		1,05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담당자	행정7급 지연정	전화	2568
-----	--------	------------	-----	----------	----	------

(나비초 본관동 옥상 등 방수 공사) (P - 10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05월 ~ 07월
- 사업규모 : 180,336천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된 시설물 보수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180,336	-	180,336	180,336	
국 비						
도 비						
시 비	-	180,336	-	180,336	180,336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옥상 및 필로티층(학생통행 및 활동공간) 바닥면 구배가 맞지 않고 배수구로 물이 잘 흘러들어가지 않아, 구간별 물고임 현상이 심하여 보수가 시급함.
- 물고임 현상으로 인해 바닥 균열이 있으며, 교실 및 복도, 통로 등 아래층으로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학생들 통행(미끄러짐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근거내용	김포시장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김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2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홈통(배수홀) 추가 설치 등으로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바닥면의 내구성 강화 필요
- 물고임 현상이 심한 옥상 및 필로티층 방수 공사로 누수현상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공 통		합 계	180,336	
나비초 본관동 옥상 등 방수공사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5층 옥상(노출형 복합방수) - 10,608,000원 × 24실 × 50%	=	127,296
		· 2층 필로티구간(노출형 복합방수) - 10,608,000원 × 10실 × 50%	=	53,0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5. ~ 07. : 본관동 옥상 및 필로티층 방수 공사, 실적보고

□ 현장 사진

옥상 누수 관련 사진		비고
		<조치전> 지속적 물고임 현상 옥상 일부구간 겨울철 노면 결빙상태
		<조치중> 옥상 결빙노면 녹임 작업중
		< 조치중 > 해빙구간 방수천으로 물기 흡수작업
		< 임시 조치완료 > 방수포로 물기 흡수후 방수비닐 보양작업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담당자	행정7급 지연정	전화	2568
-----	--------	------------	-----	----------	----	------

(은여울초 비가림 차양막 설치 공사) (P - 10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
- 사업규모 : 29,396천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학생들의 유동이 많은 학교건물에 차양막을 설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29,396	-	29,396	29,396	
국 비						
도 비						
시 비	-	29,396	-	29,396	29,396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학생들의 유동이 많은 급식실, 체육관 및 전·후관 연결통로에 비가림 차양막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함.
- 건물과 이동 동선(입구, 출구)을 명확히 분리하여, 이동 시 학생 간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고, 우천이나 폭설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근거내용	김포시장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김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2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학생이동이 많은 학교건물에 비가림 차양막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구역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공 통		합 계	29,396	
은여울초 비가림 차양막 설치공사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차양(1구간) : 200,000원 × 25.2㎡ × 50% =	2,520	
		· 차양(2구간) : 235,000원 × 49.6㎡ × 50% =	5,828	
		· 차양(3구간) : 200,000원 × 42.9㎡ × 50% =	4,290	
		· 차양(4구간) : 220,000원 × 84㎡ × 50% =	9,240	
		· 차양(5구간) : 200,000원 × 31.2㎡ × 50% =	3,120	
		· 차양(6구간) : 170,000원 × 9.6㎡ × 50% =	816	
		· 기둥커버 : 100,000원 × 26개 × 50% =	1,300	
		· 기둥커버 : 130,000원 × 10개 × 50% =	650	
		· 기둥커버 : 140,000원 × 14개 × 50% =	980	
		· 물받이 : 26,000원 × 38m × 50% =	494	
· 조달수수료 : 58,476,000원 × 0.54% × 50% =	15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4. ~ 12. : 구간별 차양막 설치 공사, 실적보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담당자	행정7급 지연정	전화	2568
-----	--------	------------	-----	----------	----	------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P - 10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59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68,640	82,248	77,556	4,692	13,608	
국 비	34,320	41,124	38,778	2,346	6,804	
도 비	17,160	20,562	19,389	1,173	3,402	
시 비	17,160	20,562	19,389	1,173	3,402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보조금 지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근거내용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만11세~만18세(※2003.1.1.~2010.12.31. 출생자)
 - ▶ 지원금액 : 연 138,000원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계	4,692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 위생용품 구입가능 바우처 지원 : 월 11,500원*34명*12월 =	4,69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2021.12. : 신규대상자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 바우처 지원
- 2021.01./ 2021.07. :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 예탁
- 2022.01.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464명 지원	
2020년	581명 지원	
2021년	546명 지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9,296	49,296	-	-	
2020년	68,640	68,640	-	-	
2021년	77,556	41,144	/	36,412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7급 이재영	전화	2595
-----	--------	-----------	-----	----------	----	------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P - 10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여성청소년 17,93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편적 여성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1,856,583	2,362,284	-505,701	1,856,583	
국 비		0	0	0	0	
도 비	-	556,975	708,685	-151,710	556,975	
시 비	-	1,299,608	1,653,599	-353,991	1,299,608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보조금 지원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근거내용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여성 위생용품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11세 ~ 18세 여성청소년(기존 여성가족부 사업 수혜자 제외)
 - ※ 2003.01.01.~2010.12.31. 출생자
 - ▶ 지원금액 : 연 138,000원 지원
- 사업규모 증가(17,118명→17,938명)하였으나 1분기 사업 미시행에 따른 사업비 감액
 - ※ 14개 참여 시군 대표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중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지연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계	합계 = -505,701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위생용품 구입 지역화폐 지원 17,938명*103,500원 - 17,118명*138,000원 = -505,70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6. ~ 2021.12. : 신규대상자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
- 2021.06. ~ 2021.12. : 분기별 지역화폐 지원
- 2022.01. : 사업비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청년과	청소년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7급 이재영	전화	2595
-----	-------	-----------	-----	----------	----	------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예선) (P - 10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북부권역(김포,고양,포천,양주 등 9개 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연극예술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꿈 모색 및 문화예술 무대 발표기회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16,000	-	16,000	16,000	
국 비						
도 비	-	16,000	-	16,000	16,000	
시 비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제30회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예선대회 개최 공모 선정

□ 법적근거

근거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3조
근거내용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청소년들에게 종합예술인 연극을 통해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	
청소년연극제	민간행사사업보조	· 프로그램(디자인포함) 1,000부 × 2,500원 = 2,500 · 포스터(디자인포함) 500장 × 1,500원 = 750 · 가로현수막 1개 × 80,000원 = 80 · X배너 5개 × 40,000원 = 200 · 트로피 제작비 10개 × 150,000원 = 1,500 · 영상 촬영 및 편집 4일 × 500,000원 = 2,000 · 행사 및 준비 스텝 식비 50식 × 8,000원 = 400 · 음료 및 간식비 1식 × 170,000원 = 170 · 심사위원 4일 × 3명 × 200,000원 = 2,400 · 조명감독 5일 × 1명 × 200,000원 = 1,000 · 무대감독 5일 × 1명 × 200,000원 = 1,000 · 음향감독 5일 × 1명 × 200,000원 = 1,000 · 진행감독 5일 × 1명 × 200,000원 = 1,000 · 무대크루 5일 × 2명 × 100,000원 = 1,000 · 진행(안전)요원 5일 × 2명 × 100,000원 = 1,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5. : 연극제 계획 수립, 참가팀 신청 접수 및 홍보
- 2021.06. : 제30회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예선 운영
- 2021.09. ~ 10. : 연극제 본선
- 2021.11. : 연극제 예선 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8급 서상훈	전화	2596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공 통		합 계	-135,367	
(재)김포시 청소년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사무국 = · 청소년수련관 = · 사우청소년문화의집 = · 통진청소년문화의집 = · 양촌청소년문화의집 = · 고촌청소년문화의집 =	-136,879 13,980 -1,965 -12,330 3,960 -2,133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2021.12. : 분기별 출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청소년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20년	- 청소년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21년	- 청소년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510,699	7,380,684	-	1,130,015	
2020년	8,599,209	7,579,161		1,020,048	
2021년	9,423,322	5,463,264		3,960,058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7급 이재영	전화	2595
-----	--------	-----------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비 지원)) (P - 10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 사업규모 : 2,579식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한 학교밖 청소년 복지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9,667	25,791	23,799	1,992	6,124	
국 비	8,435	10,055	8,063	1,992	1,620	
도 비	3,370	4,721	4,721	-	1,351	
시 비	7,862	11,015	11,015	-	3,153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보조금 지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정보화사업사전협의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제공을 통해 균형있는 영양섭취 지원 및 안정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99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비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 199식*10,000원 =	1,992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2021년 연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급
- 2021.01. ~ 2021.12. : 사업집행
- 2021.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학교밖청소년급식비 163명 지원 / 3,014건	
2021년	- 학교밖청소년급식비 40명 지원 / 1,192건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9,667	19,667	-	-	
2021년	23,799	13,000	/	10,799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7급 이재영	전화	2595
-----	--------	-----------	-----	----------	----	------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P - 10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대안교육기관
- 사업규모 : 5개소 12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93,755	112,724	108,458	4,266	18,969	
국 비						
도 비	28,126	33,817	32,537	1,280	5,691	
시 비	65,629	78,907	75,921	2,986	13,278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보조금 지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3조
근거내용	① 시장은 관내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266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초등학교 단가 상승 170원*81명*200일 =	2,754	
		· 중학생 단가 상승 180원*35명*200일 =	1,260	
		· 고등학교 단가 상승 180원*7명*200일 =	252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지원시기 및 일수

- 지급시기 : '21학년도 1학기부터
- 지원일수 : 실 수업일 수(연 200일 이내)

○ 지원대상 : 5개소 123명

- 도내 대안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학생
- 시군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시·군내 대안교육기관

○ 지원내용 : 급식비

- 지원단가 : 2021년 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적용
- ※ 초등 3,990원 → 4,160원(170원 증가)/ 중등 5160원 → 5,340원(180원 증가)/ 고등 5,500원 → 5,680원(180원 증가)

○ 지원방식

- 신청주의 : 대안교육기관(신청) → 시(접수·검토, 집행·정산, 사후관리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대안교육기관 4개소 87명 지원	
2021년	- 대안교육기관 4개소 109명 지원 ※ 1개소는 비대면 교육으로 급식비 미신청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93,755	66,698	-	27,057	
2021년	108,458	30,899	/	77,559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박혜경	담당자	행정8급 서상훈	전화	2596
-----	--------	-----------	-----	----------	----	------

(성인문해교육운영) (P - 10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 사업규모 : 5개반 1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5,300	44,000	22,000	22,000	8,700	
국 비						
도 비						
시 비	35,300	44,000	22,000	22,000	8,7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하반기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39조 제15조
근거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거나 교육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비영리법인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격차 해소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는 초등학력을 인정하여 성인학습자의 문해교육을 촉진
- 기존학습자 및 신규학습자들의 학습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계	= 22,000	
성인문해교육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교재 및 사무용품 구입	= 1,000	
	301-12 기타보상금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 35,000원*5명*6시간*20주	= 21,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3. :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 2021.04. ~ 2021.12.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교육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비문해·저학력 성인 ○ 교육강좌 : 성인문해교육 글꽃학교 5개반, 찾아가는 성인문해 2개반 운영 ○ 학력인정 : 16명	
2020년	○ 글꽃학교 5개반 93명 대상 학습과제물 배부 및 비대면 전화수업 실시 ○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2개반 23명 분반 운영 ○ 성인문해교육 수강생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실시(12회, 102명)	
2021년	○ 글꽃학교 수강생 모집 ○ 2020학년도 글꽃학교 학력인정과정 수강생 대상 비대면 졸업식 개최(1회) ○ 2020학년도 글꽃학교 모범 졸업생 교직원 경기도교육감 표창(강사, 수강생)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8,160	34,700	-	2,340	
2020년	35,300	32,223	-	3,077	
2021년	22,000	750	/	21,25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담당자	임기제마급 이지은	전화	5149
-----	--------	------------	-----	-----------	----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P - 10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5월 ~ 11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30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 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200,000	-	200,000	200,000	
국 비		100,000		100,000	100,000	
도 비						
시 비	-	100,000	-	100,000	10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 선정
- 김포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3조 및 제5조제1항
근거내용	제5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임무)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3.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 및 활성화
-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 개발 지원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계	= 200,00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 56,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 144,000	

※ 세부사업별 사업개요 : [붙임 1] 참조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 지원
- 2021.03. : 공모사업 선정
- 2021.04.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1.05. ~ 11.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추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담당자	행정7급 이풍주	전화	5151
-----	--------	------------	-----	----------	----	------

붙임 1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개요

(단위 : 천원, 명)

연번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참여대상	참여인원	교육시수	직영/위탁	운영기관
				국고	대응투자	계					
총 계				100,000	100,000	200,000					
추진과제 1. 김포형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											
1	①	시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브랜드화”	2021.5~6	0	5,000	5,000	일반시민	-	-	직영	김포시
2	①	장애인인식개선 및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2021.5~10	12,000	6,000	18,000	특수(일반)학급	200	10	직영	김포시
3	⑥	내사랑 김포알기 행복한 김포 한바퀴	2021.9~11	11,850	13,150	25,000	장애인및가족	40	22	위탁	김포대학교
4	①	너와내가 함께하는 ‘제과제빵 만들기’	2021.6~7	11,850	13,150	25,000	장애인·비장애인	20	45	위탁	김포대학교
5	①	함께 상생하는 ‘텃밭 생활’	2021.4~11	6,140	5,860	12,000	중학교 특수학급	20	16	위탁	곳간지기 사회적협동조합
6	①	우리모두 함께하는 ‘명랑 운동회’	2021.10	0	10,000	10,000	장애·비장애 아동및보호자	40	-	위탁	장애인복지관
7	⑥	수어로 소통하는 시민참여 수어교실	2021.6~7	3,500	1,500	5,000	일반시민	30	24	직영	김포시
추진과제 2. 지속가능한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											
8	②	컴퓨터 기초반	2021.5~7	780	220	1,000	지체,지적	15	26	직영	김포시
9	③	ITQ 자격증반	2021.8~11	1,700	300	2,000	지체,지적	15	34	직영	김포시
10	②	3D 프린터를 활용한 나만의 작품만들기	2021.5~10	4,900	100	5,000	지적,발달	5	26	위탁	장애인 정보화협회
11	③	커피와 함께하는 바리스타	2021.2~6	3,000	2,000	5,000	발달장애인	5	40	위탁	장애인야학
추진과제 3.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12	④	바늘없는 손뜨개질 핑거니팅 공예교실	2021.3~11	3,000	0	3,000	여성 청각장애인	12	32	위탁	농아인협회
13	④	볼링교실	2021.3~12	1,600	3,400	5,000	성인장애인	8	32	위탁	장애인복지관
14	④	장구와 국악 놀이	2021.8~12	2,000	3,000	5,000	발달장애인	7	40	위탁	장애인야학
15	④	생활체육 몸살림	2021.2~6	2,930	2,070	5,000	발달장애인	7	40	위탁	장애인야학
16	④	나의 작은 정원이야기	2021.6~11	3,000	0	3,000	발달장애인	10	30	위탁	밀알 주간보호센터

(단위 : 천원, 명)

연번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참여대상	참여인원	교육시수	직영/위탁	운영기관
				국고	대응투자	계					
17	④	미술 프로젝트 '오감만족'	2021.3 ~10	1,600	1,400	3,000	중증발달장애인	5	32	위탁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8	④	요가를 통한 '몸짱, 마음짱'	2021.4 ~9	1,200	1,800	3,000	발달장애인	9	24	위탁	보리수마을
19	④	그리기 도구로 표현하기	2021.8 ~12	2,000	3,000	5,000	성인장애인	7	40	위탁	장애인야학
20	④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	2021.4 ~11	1,500	1,500	3,000	지적, 지체	5	20	위탁	통산리다솜학교
21	④	인재 재활을 위한 두뇌건강 프로그램	2021.7 ~11	1,600	1,400	3,000	지적, 지체	5	32	위탁	통산리다솜학교
22	④	생활스포츠 활동 '우리 모두 함께뛰어'	2021.6 ~10	3,000	0	3,000	성인장애인	10	33	위탁	가연마을
23	⑤	오늘의 밥상 요리교실	2021.8 ~12	4,000	1,000	5,000	성인장애인	5	40	위탁	장애인야학
24	⑤	함께하는 힐링마을	2021.6 ~11	1,050	1,950	3,000	지적, 지체	15	30	위탁	보경장애인 보호작업장
25	⑧	스마트폰 사진교실	2021.6 ~11	1,600	3,400	5,000	성인장애인	5	32	위탁	장애인복지관
26	⑧	양상블 '땀이름 한소리'	2021.3 ~12	2,000	1,000	3,000	발달장애인	5	30	위탁	장애인 가족협회
추진과제 4.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전문성 강화											
27	⑨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포식	2021. 5	0	10,000	10,000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및 시민	50	-	직영	김포시
28	②	장애인인식개선강사 양성 아카데미	2021.8 ~12	3,000	2,000	5,000	성인장애인	7	40	위탁	장애인야학
29	⑨	평생교육 종사자 장애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2021.6 ~11	9,200	800	10,000	지역 평생교육강사	40	24	직영	김포시
30	⑨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집 제작배포	2021. 11	0	5,000	5,000	장애인 평생교육 단체·기관			직영	김포시

(평생교육 재단 설립계획 및 타당성 용역) (P - 10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5월 ~ 10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평생교육 재단 설립계획 및 타당성 용역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등을 모색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100,000	-	100,000	1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	100,000	-	100,000	10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평생교육 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설립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방출자출연법 민법 평생교육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 5조, 제16조
근거내용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증진,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 목적의 재단 설립 가능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 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진흥 정책 수립, 평생학습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등을 명시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시군 공공기관 설립 절차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 평생학습도시 생태계를 효과적·전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 평생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운영 노하우 축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계	= 100,000	
평생교육 재단 설립계획 및 타당성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평생교육 재단 설립계획 용역 · 평생교육 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 20,000 = 8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9. : 평생교육 재단 설립 운영계획 수립
- 2020.11. ~ 2021.01. : 경기도 1차 협의 완료
- 2021.05. ~ 2021.07. : 설립계획 용역
- 2021.08. ~ 2021.10. :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용역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담당자	행정7급 이풍주	전화	5151
-----	--------	------------	-----	----------	----	------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P - 10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양곡로 413 외 13 개소
- 사업규모 : 14개소, 250개 프로그램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거주 지역 중심의 읍면동 단위 시민밀착형 근거리 학습망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8,720	308,450	298,850	9,600	279,730	
국 비						
도 비						
시 비	28,720	308,450	298,850	9,600	279,73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따라 2022년 정규강좌 강사 모집 면접심사비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김포시평생학습조례	제21조의3 제1항 / 제34조, 제35조
근거내용	제21조의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배치 및 수당지급) 김포시생활임금기준에 준함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	-	-	-	-	-	-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교육 강사 모집 필요
- 프로그램 및 현황을 분석·개발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수요자에게 유용한 교육제공
- 공정한 면접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위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9,600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교육강사 면접심사비 : 200,000*4명*12개소	= 9,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추진계획 수립
- 2021.01. ~ 2021.03. : 수강생 출결시스템 설비 및 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센터 기자재 구입
- 2021.05. ~ 2021.12. :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 2001.07. ~ 2021.12. :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수립, 운영, 결과보고, 강사비 지급
- 2021.10. : 2022년 정규교육 강사 공개 모집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2019. 3월 ~ 12월 : 양촌/통진 평생학습센터 상반기 7강좌 115명, 하반기 14강좌 2019. 6월 ~ 9월 : 2019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추가 5개소 지정 /15개소 2019. 3월 ~ 12월 : 상반기 9개소 14개 강좌, 하반기 9개소 22개 강좌 지원	
2020년	2020. 10월~11월 : 온라인 전환 가능한 읍면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 기획 - 강의방법 : 화상강의(ZOOM)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16강좌 240명)	
2021년	2021. 2월~3월 : 42개 온라인교육 강사 공개 모집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5,250	79,811	0	25,438	
2020년	28,720	24,062	0	4,658	
2021년	298,850	0		298,850	3.31일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담당자	임기제행정7급 유승신 시간임기제마급 이지은	전화	5144 5149
-----	--------	------------	-----	----------------------------	----	--------------

(평생학습관 교육강좌 운영) (P - 10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3-17
- 사업규모 : 정규강좌 및 단기특강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및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25,331	421,025	421,025	-	195,694	
국 비						
도 비						
시 비	225,331	421,025	421,025	-	195,69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평생학습관 단기특강 자원 일부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자 행사 운영비로 변경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14조
근거내용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비대면 강좌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강사대상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0
평생학습관 교육강좌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평생학습관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 평생학습관 교육역량강화교육 : 7,500원 * 20명 * 16시간 * 2회 · 평생학습관 비대면 영상 제작 : 120,000원 * 20명 * 2회	= 9,600 = 4,800 = 4,800
	301-12 기타보상금	· 단기특강 강사수당 39,000,000원(162,500원*10시간*4주*6월) 중 9,600,000원	= -9,6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2. ~ : 강좌별 수강생 모집
- 2021. 01. ~ 12. : 정기 및 수시 강좌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교육기간 : 2019.1~12월 ○ 교육강좌 : 기술교육과정 및 일반실용과정 71개 강좌 ○ 교육운영 : 3기 운영(기수별 4개월), 단기특강 상반기 13강좌·하반기 15강좌	
2020년	○ 교육기간 : 2020.1~12월 ○ 교육강좌 : 기술교육과정 및 일반실용과정 69개 강좌(1~2월), 34개 강좌(8월) ○ 교육운영 : 34개 정규강좌 및 단기특강 2강좌 온라인 운영, 강사역량강화교육 등	
2021년	○ 교육기간 : 2021.2~12월 ○ 교육강좌 : 기술교육과정 및 일반실용과정 54개 강좌 ○ 교육운영 : 3기 운영(기수별 3개월)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29,055	505,982	-	23,073	
2020년	225,331	178,284	-	47,047	
2021년	421,205	51,728	/	369,477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운영팀장 최원선	담당자	행정7급 박명진 임기제마급 황진	전화	5823 5154
-----	--------	--------------	-----	----------------------	----	--------------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P - 10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3-17
- 사업규모 : 평생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플랫폼 구축을 통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추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779,192	-	779,192	779,192	
국 비						
도 비						
시 비	-	779,192	-	779,192	779,192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스템의 클라우드 도입 및 코로나 이후 비대면 교육강좌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별도 구축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14조
근거내용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2021.3월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비대면 교육강좌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및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779,192
평생학습관 교육강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평생교육 플랫폼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 200,000원* 9명	= 1,800
	207-02 전산개발비	○ 평생교육통합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 통합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 DB암호화 솔루션 구입 ·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입 · 본인인증시스템 구입 · 온라인결제시스템 구입 · 동영상 스트리밍 솔루션 구입 · 순번대기 솔루션 구입 · DB기술지원 솔루션 구입	= 777,392 = 450,000 = 138,512 = 45,500 = 1,300 = 500 = 61,000 = 50,000 = 30,58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3. : 2021년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사 등(정보통신과)
- 2021.03. : 2021년 1회 추경 예산 반영
- 2021.04. : 보안성 검토 요청(정보통신과)
- 2021.04. :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 의견 요청(회계과)
- 2021.05. :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감사담당관)
- 2021.05. : 계약 의뢰(회계과)
- 2021.06. ~ 12. : 구축 및 시범운영
- 2022.01. : 정상운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운영팀장 최원선	담당자	행정7급 박명진	전화	5823
-----	--------	--------------	-----	----------	----	------

(평생학습관 환경정비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P - 10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 사업규모 : 평생학습관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평생학습관의 쾌적한 교육시설 및 환경 유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66,750	178,383	173,381	5,002	11,633	
국 비						
도 비						
시 비	166,750	178,383	173,381	5,002	11,633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평생학습관 관리 기간제 인력(청사안내, 주차관리)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채용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 계약으로 1개월분 보수 추가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13조
근거내용	제13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평생학습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력운영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김포시)에 근거하여 60세 이상 고령 기간제근로자 2명(청사안내, 주차관리)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계약에 따라 1개월분의 보수 증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5,002	
평생학습관 환경정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간제근로자 보수(안내, 주차)	= 3,248	
		· 기본급 : 81,200원*2명*20일	= 974	
		· 유급휴일수당 : 81,200원*2명*6일	= 260	
		· 급식비 : 130,000원*2명*1월	=	
		· 4대 보험료 : 520,000원	= 5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2021.12.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평생학습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근태 관리 - 청사 외벽 청소 및 왁스 청소(2회) - 평생학습관 조리실 및 제빵실 청소 및 소독(3회)	
2020년	- 평생학습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근태 관리 - 청사 외벽 청소 및 왁스 청소(1회) - 평생학습관 조리실 및 제빵실 청소 및 소독	
2021년	- 평생학습관 관리 기간제 근로자 근태 관리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0,414	66,813	-	3,601	
2020년	166,750	150,590	-	16,160	
2021년	173,381	37,550	/	135,831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담당자	행정8급 안초롱	전화	2581
-----	--------	------------	-----	----------	----	------

(평생학습관 시설운영 - 청사경비용역) (P - 10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13-17
- 사업규모 : 평생학습관(지하1층,지상5층, 대강당 328석)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시설 보안 및 직원 및 이용자 안전 확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84,632	260,812	285,812	-25,000	-23,820	
국 비						
도 비						
시 비	284,632	260,812	285,812	-25,000	-23,82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평생학습관 청사경비용역비를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평생학습조례	제13조
근거내용	제13조(설치·운영 등)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평생학습관 대면 강좌의 전면 온라인 운영전환으로 청사경비용역비 감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합계	=	-25,000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청사경비용역 : 25,000,000원	=	-2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 평생학습관 대면 교육강좌 및 시설 대관 운영 재개시 경비용역 실시 재검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관 청사 경비 용역 실시 - 경비용역업체 : (주)대림비엠시 - 용역 기간 :2019. 1. 1.~ 2019.12.31. - 계약금액 : 19,868,640원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관 청사 경비 용역 실시 - 경비용역업체 : 윤별하람(주) - 용역 기간 :2020. 1. 1.~ 2020.12.31. - 계약금액 : 최초 20,393,470원 → 15,411,970원 ※ 코로나19로 청사경비 일시 중단에 따른 변경계약 	
2021년	해당없음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4,000	19,869	-	4,131	
2020년	25,000	15,412	-	9,588	
2021년	25,000	-		25,00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담당자	행정8급 김우정	전화	2580
-----	--------	------------	-----	----------	----	------

(평생교육관 건립) (P - 10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2024년 ○ 위 치 : 김포시 장기동 2089-1번지(구거)외 2필지(시유자:공원)
- 사업규모 : 평생교육관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민들 접근성 제고 및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관 신규 건립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	100,000	-	100,000	1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	100,000	-	100,000	10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평생교육관 신규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제37조 제2항 / 제14조
근거내용	<p>제37조 제2항</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p> <p>7.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	계속□	대상	대상 반영예정	대상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대상	대상 반영예정	대상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2022.05월	2021.10월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평생교육관 신규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 100,000
평생교육관 건립	207-01 연구용역비	· 평생교육관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100,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05. : 신규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 추진
- 2021. 07.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관리계획 수립
- 2021.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 및 재정투자심사 추진
- 2022. 01.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이행
- 2022. 04. : 건축설계 공모 완료
- 2023. 03.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3. 04. : 공사 착공
- 2024. 06. : 공사 준공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운영팀장 최원선	담당자	행정7급 박명진	전화	5823
-----	--------	--------------	-----	----------	----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P - 10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48(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 사업규모 : 338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주기적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조치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2,404	69,022	69,940	-918	26,618	
국 비	21,202	34,511	34,970	-459	13,309	
도 비						
시 비	21,202	34,511	34,970	-459	13,309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기존장비(138대)의 교체비용 감소에 따른 사업비 918,000원 삭감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안전취약계층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총계 = 69,022 -인건비 : 26,067,396원*1명 = 26,067 -총사업비 : 42,955,500원 = 42,955 -기존장비운영비:8,800,000원 -20년교체장비: 6,000,000원 -신규장비:15,240,000원 -21년신규장비: 7,700,000원 -소모품비: 1,215,500원 -지역센터운영비: 4,000,000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1 : 노후 장비 교체(50대) 및 신규장비 설치(107대)
- 2021.01~12 : 신규 장비 추가 설치(81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독거노인 94가구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 46가구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2020년	· 독거노인 97가구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 47가구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2021년	· 독거노인 97가구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 47가구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2,500	32,016	0	484	
2020년	42,404	30,322	0	12,082	
2021년	69,940	17,587	0	52,353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주현	전화	2630
-----	--------	------------	-----	------------	----	------

(노인행사 등 지원) (P - 10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9~11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참여인원 1,000여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노인 복지에 대한 시민 참여와 화합을 통하여 경로효친 함양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8,000	91,000	0	91,000	63,000	
국 비						
도 비						
시 비	28,000	91,000	0	91,000	63,0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본예산 미반영분 추경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 제11항 제3호
근거내용	제2조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인의 날 행사 14개 읍면동 행사 지원
- 노인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 참여와 화합을 통하여 경로효친 함양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공 통		총계	91,000	
노인의 날 행사	201-03 행사운영비	· 2,000,000원*14개 읍·면·동 =	28,000	
노인의 날 행사 급양비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4,500,000원*14개 읍·면·동 =	6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7.~08 : 2021년 노인의 날 행사 개최 기본 계획 수립, 시설 대관
- 2021.09. : 읍·면·동(14개)자금 재배정
- 2021.10. : 노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개최일시 : 2019.11. 14 - 개최장소 :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 - 참여인원 : 1,000명 - 행사내용 : 기념식, 노인잔치, 협동바운드 등 체육대회	
2020년	- 개최일시 : 2020.11.27 - 개최장소 :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대강당 - 참여인원 : 90명 - 행사내용 : 기념식, 유공자 표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축소
2021년	- 개최일시 : 2021.10월중(예정) - 개최장소 :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 - 참여인원 : 1000여명(예정) - 행사내용 : 기념식, 유공자 표창, 체육대회 등 ※코로나19 상황 고려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8,000	78,000	0	0	
2020년	28,000	26,000		2,000	
2021년	0	0		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사회복지6급 김경인	전화	2204
-----	--------	------------	-----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P - 10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01~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48(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6번길 40-2(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 사업규모 : 수행기관 2개소(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50명, 대상노인수 79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143,730	1,004,510	1,000,050	4,460	-139,220	
국 비	800,602	703,150	700,020	3,130	-97,452	
도 비	51,468	45,204	45,004	200	-6,264	
시 비	291,660	256,156	255,026	1,130	-35,50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사업수행 인건비 기본급 배정기준 변경(사회복지사 2,209,300원→2,250,000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 2,310천원(기본급 상향조정에 따른 퇴직금, 4대보험료 증가분 포함)
 - * 기존 인건비 편성시 2,209,300원으로 전담사회복지사 기본급으로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를 통해 선임전담사회복지사(근무경력 4년이상) 기본급 2,250,000원으로 기본급이 조정됨)
- 사업비 중 교육비 3,450,000원에서 5,600,000원으로 증액 : 2,150천원
 - * 기존 사업비(교육) 편성시 사회복지사 교육비11만원, 생활지원사 교육비 6만원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를 통해 사회복지사 15만원, 생활지원사 10만원으로 단가 조정됨)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근거내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54명에 대한 인건비(기본급, 퇴직적립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및 사업비(프로그램 및 기관운영비, 교육비 등)증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총 계	4,460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941,950,000원(만원단위 맞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사회복지사) : 2,250,000원x4명*12개월=108,000,000원 - 기본급(생활관리사) : 1,137,090원x50명*12개월=682,254,000원 - 퇴직적립금 : 65,860,00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85,830,000원 <p style="text-align: right;">*939,640,000원(21년 본예산)+2,310,000원 =941,950,000원(추경변경액)</p>	=	2,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62,560,000원(만원단위 맞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및 기관운영비 6,000원*791명*12개월 : 56,952,000원 - 교육비(5,600,000원) 150,000원*4명=600,000원 100,000원*50명=5,000,000원 <p style="text-align: right;">*60,410,000원(21년본예산)+2,150,000원 =62,560,000원(추경변경액)</p>	=	2,1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 : 사업 정산보고 및 2021년 사업계획 수립
- 2021.01. : 2021년 사업 시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2개소(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수행인력 50명(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46명)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799명(20.12월 기준) 	20년도 신규사업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2개소(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수행인력 51명(전담사회복지사 3명, 생활지원사 48명)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536명 사업진행 중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143,730	1,143,436	0	294	20년도 신규사업
2021년	1,000,050	260,193	/	739,857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사회복지6급 김경인	전화	2204
-----	--------	------------	-----	------------	----	------

(노인복지관 운영비) (P - 10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48(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6번길 40-2(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 사업규모 : 관내 노인복지관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등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040,000	1,140,000	1,040,000	100,000	100,000	
국 비						
도 비	104,000	114,000	104,000	10,000	10,000	
시 비	936,000	1,026,000	936,000	90,000	9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개소당 520,000천원 → 570,000천원)
- 노인복지관 운영비(도비) 증액분에 대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자체) 감액으로 2021년도 노인복지관 전체 운영비 변동 없음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7조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년11월	-	-	-	-	2016.12.21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인종합복지관 및 북부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307-05 민간위탁금	증액 50,000,000원* 2개소 = 100,000,000원 =	10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2020.01 : 2020년 사업 정산보고 및 2021년 노인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 2021.01~03 : 노인복지관 사업 세부계획 추진 및 간담회 실시
- 2021.04~06 : 노인복지관 보조금 정산 및 운영실태 점검
- 2021.11~12 : 2021년 실적보고 및 2022년 예산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 520,000천원 -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520,000천원	
2020년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 520,000천원 -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520,000천원	
2021년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 130,000천원 -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130,000천원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40,000	1,040,000	0	0	
2020년	1,040,000	1,040,000	0	0	
2021년	1,140,000	260,000		880,00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사회복지8급 이미영	전화	5560
-----	--------	------------	-----	------------	----	------

(노인복지관 운영비(자체)) (P - 10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 치 :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48(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6번길 40-2(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 사업규모 : 관내 노인복지관 2 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하여 노인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661,650	1,976,850	2,065,440	-88,590	315,200	
국 비						
도 비						
시 비	1,661,650	1,976,850	2,065,440	-88,590	315,2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변경내시 반영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 증액에 따른 자체 운영비 감액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의 노후된 식기세척기 교체로 인한 10,160,000원 증액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의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 컴퓨터 구입 1,250,000원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7조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2016.12월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 2005년 개관당시 구입한 식기세척기(조달청 내구연한 7년)를 16년 사용하여 고장이 잦아 노인 무료 급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식기세척기 교체 필요
 - 코로나 -19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비대면 전환으로 영상제작에 필요한 노후 컴퓨터 교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노인복지관 운영비(자체)	307-05 민간위탁금	총 계	-88,590	
		소 계	-100,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 50,000,000원* 2개소 = 100,000,000원 (노인복지관 운영(도비사업) 변경내시(100,000천원 = 증가분액 따른 자체운영비 감액)	-100,000	
		소 계	11,410	
		추가 식기세척기 : 10,160,000원x1대	= 10,160	
		추가 컴퓨터 : 1,250,000원x1대	= 1,2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2021.01 : 2019년 사업 정산보고 및 2020년 노인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 2021.01~03 : 노인복지관 사업 세부계획 추진 및 간담회 실시
- 2021.04~06 : 노인복지관 보조금 정산 및 운영실태 점검
- 2021.11~12 : 2021년 실적보고 및 2022년 예산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985,771천원 지원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기능지원 기능보강 508,069천원 지원 -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593,394천원 지원	
2020년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839,698천원 지원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차량지원 28,133천원 지원 -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525,557천원 지원	
2021년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650,204천원 지원 -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516,500천원 지원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320,675	2,087,235	0	233,440	
2020년	1,661,650	1,399,291	0	262,359	
2021년	2,065,440	1,166,704		1,509,674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사회복지8급 이미영	전화	5560
-----	--------	------------	-----	------------	----	------

(경로식당 무료급식(자체)) (P - 108)

□ 지방보조사업 개요(사업비)

- 사업기간 : 2021.4.~12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외 1개소 대표자 : 임은경 외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경로식당 무료식사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0,618	35,640	0	35,640	5,022	
시 비	30,618	35,640	0	35,640	5,022	
자부담						

□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1분기 대비 및 도비지원 사업량 대비 무료급식 대상자 증가(210명→270명)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무료급식자 수 증가분을 복지관 후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후원금 감소로 시비로 추가 편성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 3000(원)*60(명)*22(일)*9(월)	계	시비	자부담	
		총 계		35,640		
		합 계		35,640		
경로식당 무료급식 (자체)	307-11 민간복지사업보조	- 일 시 : 2021. 4월~12월 - 장 소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외 1개소 - 참여인원 : 60명 - 지원단체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외 1개소 - 사업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산출근거 : 3000원*60명*22일*9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20년	○ 보조사업자 :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외 1개소 ○ 추진실적 : 2,700원*90명*21일*6월	
2021년	-	3.31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19년	-	-	-	-	-	-	-	-	-	
2020년	30,618	30,618	-	30,618	30,618	-	0	0	-	
2021년	-	-	-	-	-	-	-	-	-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주현	전화	2630
-----	-------	------------	-----	------------	----	------

(경로당 개보수 지원(자체)) (P - 108)

□ 지방보조사업 개요(사업비)

- 사업기간 : 2021. 5. ~ 2021. 12.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운곡마을 경로당 대표자 : 김초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노인복지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C)	1회 추경(D)		
계	0	30,000	0	30,000	30,000	
시 비	0	30,000	0	30,000	30,000	
자부담	0	0	0	0	0	

□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감사유

- 경로당 지붕누수로 인한 보수공사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2조, 제3조
근거내용	김포시장은 김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0년 우기철 집중폭우에 따른 지붕누수로 경로당 내부 침수피해 발생
- 김포시 안전자문단 합동 현장확인 결과 누수 및 노후된 시설 다수 확인되어 안전상 문제로 긴급 보수공사 필요
- 경로당 지붕교체 및 우수관 증설, 외벽 방수, 화장실 외부배관 누수방지 공사 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경로당 개보수 지원 (자체)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운곡경로당 누수 우기철대비 보수공사> · 순공사원가(재료, 노무, 경비): 24,000,000원 · 일반관리비 등: 3,800,000원 · 부가세 등: 2,200,000원	30,000	30,000	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재현	전화	2207
-----	--------	------------	-----	------------	----	------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P - 10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4. ~ 2021.12.
- 위 치 : 노인시설 사라의 집 외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80,000	0	80,000	80,000	
국 비						
도 비	0	40,000	0	40,000	40,000	
시 비	0	40,000	0	40,000	40,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7조
근거내용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인공동생활가정 사라의 집 노후 환경 개선
- 울생2리 경로당 철근 노출, 실내 누수 등 수리
- 송마2리 경로당 옥상계단 설치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총 계 = 80,000 · 사라의집 환경개선 20,000,000원 = 20,000 · 울생2리 경로당 개보수 40,000,000원 = 40,000 · 송마2리 경로당 설치보수 20,000,000원 = 2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4.~2021.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기타사항

시설구분	시설명	위치	준공년도	건축면적 및 연면적	사업내역
노인여가(경로당)	울생2리경로당	김포시 대곶면 울생중앙로 40	1985년	178.2㎡ /178.2㎡	철근 노출, 실내 누수 등 수리
노인여가(경로당)	송마2리경로당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604-3	2005년	109.38㎡ /199.26㎡	옥상 계단 설치
노인주거 (공동생활)	사라의 집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331번길 307-37	2007년	300.2㎡ /799.38㎡	외벽방수, 테라스 방수막 교체 등 수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재현	전화	2207
-----	--------	------------	-----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P - 10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39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348,416	8,146,100	8,146,178	-78	797,684	
국 비	3,851,208	4,073,050	4,073,089	-39	221,842	
도 비	524,574	610,958	610,963	-5	86,384	
시 비	2,972,634	3,462,092	3,462,126	-34	489,458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본예산 중 행사실비지원금(종사자 회의, 주간행사 참석 등) 비용 삭감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2019.10월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업비 감액내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축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노인일자리사업 회의 등 (1,000,000원 - 78,000원 = 922,000원)	= -7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2.~ : 참여자 활동 시작
- 2021.09. : 수행기관 지도점검
- 2021.12.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아동학습지도봉사 외 38개 사업에 5,137,222천원 지원, 1,935명 참여	
2020년	· 김포원조할매두부사업 외 49개 사업에 5,288,618천원 지원, 2,181명 참여	
2021년	· 스킨존교통지원 외 44개 사업에 2,950,994천원 지원, 2,280명 참여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230,097	5,137,222	0	92,875	
2020년	7,348,416	5,288,618	0	2,059,798	
2021년	8,146,178	2,950,994		5,195,184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이준희	전화	2206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5년 미만 직원: 100,000원*2명*12월 (기존 6명→변경 8명,2명추가) =	2,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12. : 매월 25일 종사자 총 8명에 특수근무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종사자 6인에 특수근무수당 8,250천원 지급	
2020년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종사자 6인에 특수근무수당 7,850천원 지급	
2021년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종사자 8인에 특수근무수당 2,600천원 지급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400	8,250	0	150	
2020년	9,600	7,850	0	1,750	
2021년	9,000	2,600		6,40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이준희	전화	2206
-----	--------	------------	-----	----------	----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P - 10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북부노인복지관) 종사자 2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개선(보수격차 해소)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통한 노인 복지 서비스 질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0,200	14,400	13,200	1,200	4,200	
국 비						
도 비	10,200	14,400	13,200	1,200	4,200	
시 비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수행기관(김포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사업량(종사자)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 (22명 → 24명)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근거내용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 지급 기준 : 수행기관 종사자 및 전담인력 50천원/월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50,000원*2명*12월 (추가인원 2명, 기본22명→변경24명)	= 1,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12. : 매월 25일 종사자 및 전담인력 총 24명에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13명(시니어클럽 7명, 실버인력뱅크 5명, 대한노인회 1명)에 처우개선비 8,300천원 지급	
2020년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17명(시니어클럽 8명, 실버인력뱅크 6명, 대한노인회 2명, 북부노인복지관 1명)에 처우개선비 9,450천원 지급	
2021년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24명(시니어클럽 15명, 대한노인회 2명, 북부노인복지관 7명)에 처우개선비 3,500천원 지급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400	8,300	0	100	
2020년	10,200	9,450	0	750	
2021년	13,200	3,500		9,70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이준희	전화	2206
-----	--------	------------	-----	----------	----	------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 (P - 10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12. ○ 위 치 :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민간분야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 사업에 초기투자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발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0	150,000	-150,000	0	
국 비						
도 비	0	0	75,000	-75,000	0	
시 비	0	0	75,000	-75,000	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당초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 실버카페 3호점 개점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신규 사업 포기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2조 제1항
근거내용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행기관(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사업포기로 인해 사업진행 불가로 예산 삭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합 계	= -150,000	
		· 사업비(설비투자비, 홍보비, 재료비 등) -145,000,000원	= -145,000	
		· 운영비(공공요금, 보험료 등) -5,000,000원	= -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2. : 경기도 사업 계획 철회 요청 및 삭감(도 노인복지과-4184(2021.2.10.)호)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행정9급 이준희	전화	2206
-----	--------	------------	-----	----------	----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P - 10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04~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22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들의 의료수가를 지원(대납)하여 원활한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비용 지원 복지서비스)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720,034	5,814,128	5,854,000	-39,872	1,094,094	
국 비						
도 비	2,360,017	2,907,064	2,927,000	-19,936	547,047	
시 비	2,360,017	2,907,604	2,927,000	-19,936	547,047	
기 타						

□ 예산 삭감사유

- 사업량 1명분 감소되어 도내시 변경(226→225명)

□ 법적근거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2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업량 1명분 감소되어 도내시 변경(226→225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총 계	-39,872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180,554원*225명*12월=5,814,128원) - (2,180,554원*226명*12월=5,845,000원)	= -39,87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4. : 2분기 시설급여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1분기 : 987,367천원 · 2분기 : 987,367천원 · 3분기 : 986,427천원 · 4분기 : 1,007,715천원	
2020년	· 1분기 : 1,157,661천원 · 2분기 : 1,135,748천원 · 3분기 : 1,157,661천원	
2021년	· 1분기 : 1,457,687천원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968,876	3,968,876		0	
2020년	4,720,034	4,720,034		0	
2021년	5,854,000	1,457,687		4,396,313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전에스터	전화	2425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사)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함에 따라 노인들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통하여 노인여가 복지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제3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정기안전점검비 1,300,000원*2회 =	2,600	

□ 사업 추진계획

- 2021.04.~2021.06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2021.07.~2021.12.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제3종시설물(김포어린이집 및 노인회 사무실) 정기안전 점검(상하반기)	20년도 신규사업
2021년	제3종시설물(김포어린이집 및 노인회 사무실) 정기안전 점검(상하반기)실시예정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3,600	2,600	0	1,000	20년도 신규사업
2021년	0	0		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재현	전화	2207
-----	--------	------------	-----	------------	----	------

(장사 및 노인시설 공유재산 유지관리) (P - 1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5.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장사시설(15개소), 노인시설(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장사시설 및 관련 공유재산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3,000	16,655	13,000	3,655	3,655	
국 비						
도 비						
시 비	13,000	16,655	13,000	3,655	3,65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공설묘지, 공설봉안담 및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3개소 경계측량(복원 및 분할) 실시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5호
근거내용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호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초원공설묘지, 마조공설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하여 인근 사유지와 토지경계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실시 및 김포시추모공원 경계(분할)측량을 완료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장사 및 노인시설 정비	201-01 사무 관리비	○ 초완지공설묘자: 면적 8,529㎡ 기준 555,000원(단가) + 55,500원(수수료)= 610,500원 ○ 미조공설묘지 319-4: 면적 295㎡ 기준 526,000원(단가) + 52,600원(수수료)= 578,600원 ○ 미조공설묘지 434-6: 면적 1,370㎡ 기준 710,000원(단가) + 71,000원(수수료)= 781,000원 ○ 김포시추모공원: 면적 3,000㎡ 기준 572,000원(단가) + 57,200원(수수료)= 629,200원 ○ 김포시추모공원: 면적 21,717㎡ 기준 959,000원(단가) + 95,900원(수수료)= 1,054,900원	3,655	2021년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 적용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04. : 공설·공동묘지 경계(복원)측량 및 김포시추모공원 경계(분할)측량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불법장사시설 행정처분 관련 안내 표지판·현수막 구입 및 설치 등	
2020년	◦ 공설·공동묘지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등	
2021년	◦ 김포시추모공원 경계(복원)측량 완료 등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000	2,717		283	
2020년	13,000	12,419		581	
2021년	13,000	6,595		6,405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시설9급 장기영	전화	2115
-----	--------	------------	-----	----------	----	------

(공설묘지 정비공사) (P - 1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월 ○ 위 치 :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109-7 외 3개소
- 사업규모 : 메쉬웬스 설치 및 배수로 공사, 나무계단 수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추락위험 구간에 메쉬웬스 설치 및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배수로 공사와 나무계단 수리를 통해 공설묘지 이용객 사고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30,263	0	30,263	30,263	
국 비						
도 비						
시 비	0	30,263	0	30,263	30,263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시 공설묘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공사비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시행령,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근거내용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양택공설묘지 일부 구간이 지대가 높아 추락 위험이 있음
 - 메쉬웬스가 일부 구간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구간에도 설치를 완료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
- 초원지공설묘지 진입로에 설치되어있는 나무계단 부분 파손 및 메쉬웬스 설치
 - 나무계단 수리 및 재설치를 통해 봉쇄해둔 진입로를 다시 개방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
 - 민원인의 사유지 침범 여부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경계측량 요구에 따라, 측량 완료 후 웬스 설치
- 태리공설묘지에 배수로가 미비된 상태라 매해 누수에 대한 위험 및 피해가 따름
 - 배수로 설치를 통해 원활한 수로 기능을 만들어 누수 위험 방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공설묘지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 양택공설묘지 메쉬웬스 설치 65,040원*123m 8,000,000원 · 초원지공설묘지 메쉬웬스 설치 65,040원*97m 6,300,000원	14,300	
		· 초원지공설묘지 계단보수공사 칩목계단(1500*300) 220,000원*6 1,320,000원 시멘트(40kg) 5,000원*10 50,000원 모래(㎥) 150,000*1 150,000원 기둥난간(2m경간) 400,000*4 1,600,000원 기존시설물처리(폐기) 450,000*1 450,000원 장비(1톤미만) 1,100,000*2 2,200,000원 운반공 800,000*1 800,000원 공과잡비 견적금액의 5% 328,500원 부가세 10% 689,850원	7,589	
		· 태리공동묘지 배수로설치공사 터파기(굴삭기) 550,000원*1 550,000원 되메우기(굴삭기) 550,000원*1 550,000원 측구수로관설치(300*300) 110,000*15 1,650,000원 측구수로관트랜치(300*1000*50) 50,000*30 1,500,000원 맨홀공(800*800) 1,000,000원*2 2,000,000원 운반공 500,000*2 1,000,000원 공과잡비 견적금액의 5% 362,500원 부가세 10% 761,250원	8,374	

□ 사업현장 관련 사진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04.~2021.05.: 공사착공 및 준공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시설9급 장기영	전화	2115
-----	--------	------------	-----	----------	----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P - 1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1.~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예방법,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화장 및 장례비를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1,715	1,285	0	1,285	-10,430	
국 비	11,715	1,285	0	1,285	-10,430	
도 비						
시 비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0년도 장례비 지급비용 부족분이 교부됨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5의2호
근거내용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시신으로 인한 감염 전파 방지 및 예방 조치를 위해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1,285,000원*1명 =	1,28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1.~2020.12. : 코로나19 사망자 감염병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 지원
- 2021. 4. : 2020년도 장례지원비 부족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20년 신규사업
2021년	-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11,715	11,715	0	0	
2021년	-	-		-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주현	전화	2630
-----	--------	------------	-----	------------	----	------

(청각장애인 재활지원(도비)) (P - 1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이후 언어 및 청각 기능의 향상을 위한 재활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000	6,000	0	6,000	3,000	
국 비						
도 비	900	1,800	0	1,800	900	
시 비	2,100	4,200	0	4,200	2,1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예산 확정에 따라 대상자 2명 선정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해당 대상자에게 3년간 매년 3,000천원 이내 재활 치료비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 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이후, 재활치료에 필요한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지속적인 언어·청능 기능의 향상 및 회복을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도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00원*2명 =	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12. : 사업집행(지원현황 모니터링)
- 2021.08.~10. : 결과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추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이용자 : 1명	
2020년	이용자 : 1명	
2021년	이용자 : 0명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000	2,050	0	950	
2020년	3,000	2,971		29	
2021년	0	0		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담당자	사회복지9급 장근모	전화	2629
-----	--------	-------------	-----	------------	----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P - 11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60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295,945	1,290,361	1,295,945	-5,584	-5,584	
국 비	907,161	903,253	907,161	-3,908	-3,908	
도 비	58,318	58,066	58,318	-252	-252	
시 비	330,466	329,042	330,466	-1,424	-1,42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도 본예산 1,295,945천원에서 변경내시 1,290,361천원 반영 차액 5,584천원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년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본예산에 확정내시 미반영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22만원 ~ 16만원 차등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78,918원*601명*12월)-(179,693*601명*12월) =	-5,58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01. ~ 2021.12. : 사업비 예탁, 대상자 선정 및 사업진행현황 모니터링
- 2021.01. ~ 2021.02. : 상반기 소득재조사
- 2021.06. ~ 2021.10. :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하반기 소득재조사
- 2022.01. ~ 2022.02. : 사업 정산 및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 638명 -발달재활 제공기관 : 29개소	
2020년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 607명 -발달재활 제공기관 : 33개소	
2021년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 594명 -발달재활 제공기관 : 33개소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45,000	1,041,921	0	3,079	
2020년	1,295,945	1,101,454	0	194,491	
2021년	1,290,361	647,973		642,388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은정	전화	2213
-----	--------	-------------	-----	------------	----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P - 11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병변장애로 인해 자녀에 대해 적극적 학습지원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684	6,490	2,084	4,406	2,806	
국 비	2,579	4,543	1,459	3,084	1,964	
도 비	166	292	94	198	126	
시 비	939	1,655	531	1,124	716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확정내시 변경 반영하여 사업규모 1명에서 3명으로 증가(2명 증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장애인가족지원)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본예산에 확정내시 미반영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22만원 ~ 16만원 차등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183,584원 × 2명 × 12월 =	4,40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01.~12. : 사업비 예탁 및 사업진행현황 모니터링
- 2021.01.~02. : 상반기 소득재조사
- 2021.06.~10. :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하반기 소득재조사
- 2022.01.~02. : 사업 정산 및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연3명 지원 김포아동발달센터 3명 (단가 40,000원)	
2020년	·연2명 지원 김포아동발달센터 1명 (단가 44,000원) 새론감통아동발달센터 1명 (단가 43,000원)	
2021년	·연2명 지원 김포아동발달센터 1명 (단가 44,000원) 새론감통아동발달센터 1명 (단가 43,000원)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980	4,461	0	519	
2020년	3,684	3,062	0	622	
2021년	6,490	1,043		5,447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담당자	복지9급 신은정	전화	2213
-----	--------	-------------	-----	----------	----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난방기기보급)(성립전)) (P - 11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9.
- 위 치 : 가연마을(월곶면 용강로37번길 76-25), 예지원(월곶면 용강로 377)
 , 통진프란치스프집(통진읍 김포대로 2398-68)
- 사업규모 : 국비지원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난방기기 보급을 통하여 입소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유지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67,546	30,800	26,000	4,800	-36,746	
국 비	33,773	15,400	13,000	2,400	-18,373	
도 비	33,773	15,400	13,000	2,400	-18,373	
시 비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난방기기 보급에 따른 예산 증가(800,000원x2개x3개소=4,800,000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동절기 대비 난방기기 보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합 계	= 4,800	-
		· 가연마을 - 난방기기 2기 × 800,000원	= 1,600	
		· 예지원 - 난방기기 2기 × 800,000원	= 1,600	
		· 통진프란치스코집 - 난방기기 2기 × 800,000원	= 1,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 18. : 난방기기 구입 추진 사업 통보 및 변경내시
- 2021. 1. 25. : 국비 교부 결정 및 통보
- 2021. 1. 28. ~ 2. 3. : 국비 성립전 예산 편성 및 1차 시설교부(2,400천원)
- 2021. 9. : 도비 교부 결정 통보 및 2차 시설교부(2,400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가연마을 소방시설(배연창설치)지원 = 27,000,000원 · 예지원 소방시설(배연창설치)지원 = 25,000,000원 · 예지원 운수보일러 교체 = 35,000,000원 · 통진프란치스코집(화장실 개보수)지원 = 11,978,000원	
2020년	· 가연마을 차량지원 = 38,300,000원 · 통진프란치스코집 차량지원 = 32,496,000원(자부담 3,250,000원)	
2021년	· 예지원 차량지원 = 26,000,000원(자부담 2,770,000원) · 예지원,가연마을,통진프란치스코집 난방기기 국비분 지원 = 2,392,000원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98,978	98,978	0	0	
2020년	67,546	67,546	0	0	
2021년	28,400	28,392		8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6급 배정민	전화	2216
-----	--------	-------------	-----	----------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7종)) (P - 1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 치 : 보리수마을(승가로89 108동 101호)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79,277	659,199	644,192	15,007	-120,078	
국 비						
도 비	79,928	65,920	64,419	1,501	-14,008	
시 비	719,349	593,279	579,773	13,506	-126,07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교대인력 확충 및 인건비 예산지원
-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간병인비 감액내시(△4,953천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9.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생활지도원(직원) 교대인력 추가 채용에 필요한 6개월분 인건비를 지원하여 생활지도원의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7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합계	15,007	
		- 생활지도원 1인 인건비 × 6월	= 19,960	
		- 간병인비 : 4,953천원 감액	= -4,95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3. 29 : 20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7종) 변경내시 통지
- 2021. 7. : 인건비 교부결정 통보 및 시설교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가연마을 외 4개소 / 특수근무수당포함 7종 505,288	
2020년	가연마을 외 4개소 / 특수근무수당포함 7종 526,731	
2021년	가연마을 외 4개소 / 특수근무수당포함 7종 150,787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48,284	505,288	0	42,996	
2020년	613,964	526,731	0	87,233	
2021년	644,192	150,787	0	493,405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복지6급 배정민	전화	2216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2종)	402-02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	총 계 =	10,000	
		· 확장공사:2,300,000원 - 벽 철거 1,000,000원*1식 - 도배바닥마감 500,000원*1식 - 슬라이딩도어 800,000원*1식 =	2,300	
		· 물품구입:7,700,000원(만원단위 조정) - 수납장 30,000원*1개 - 목공작업테이블 100,000원*1개 - 멀티테이블, 에어매트 4,400,000원*1식 - 소파 1,200,000원*1개 - 침대 1,200,000원*1개 - 티테이블 150,000원*1개 - 의자 30,000*4개 - 블루투스사운드바 320,000원*1개 - 디지털수족관 90,000원*1개 =	7,7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 13 ~ 1. 22. :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신청 접수
- 2021. 1. 28. : 경기도 신청(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2021. 2. 19. :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선정
- 2021. 5. ~ :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혜란	전화	2218
-----	--------	-------------	-----	------------	----	------

(사회복무제도 지원) (P - 1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1. ~ 12.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무원 18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무원의 근무요건 마련 및 사기진작 기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무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 지급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257,000	1,245,706	1,280,482	-34,776	-11,294	
국 비	1,257,000	1,245,706	1,280,482	-34,776	-11,294	
도 비						
시 비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사업량 감소(188명→183명) 예상에 따른 확정내시 통보

□ 법적근거

근거법령	병역법	제31조 제5항
근거내용	제5항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지무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회복지무원 중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183명)의 보상금 지급
-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합 계 =	-34,776	
		·봉 급 : 549,200원*5명*11월 =	-30,206	
		·교통비 : 2,600원(일)*5명*237일 =	-3,081	
		·피복비 : 297,840원*5명 =	-1,48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12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에게 봉급, 교통비, 피복비(1회) 제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요원 봉급·교통비·피복비 지급(총 1,760명)	
2020년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요원 봉급·교통비·피복비 지급(총 1,905명)	
2021년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요원 봉급·교통비·피복비 지급(총 300명)	3.31일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87,899	852,229	0	35,670	
2020년	1,257,000	1,055,545	0	201,455	
2021년	1,280,482	163,256		1,117,226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혜란	전화	2218
-----	--------	-------------	-----	------------	----	------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P - 11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5. ~ 2021.12.
- 사업규모 : 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전담반 운영을 통한 인건비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기능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45,000	0	45,000	45,000	
국 비						
도 비	0	4,500	0	4,500	4,500	
시 비	0	40,500	0	40,500	40,5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공모 신청 및 선정을 통한 신규사업 시행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존 중증장애인의 공격적, 자해적 행동에 따라 기존 돌봄비율(장애인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 발생
-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전담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보강(1명) 인건비 지원하여 장애인2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 배치로 돌봄기능 강화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중증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합 계	45,000	
		- 기본급(3급4호봉기준) 2,217,000원*12개월	= 26,604	
		- 제수당(수당,4대보험,퇴직적립금등) 18,396,000원	= 18,39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 13 ~ 1. 22. :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신청 접수
- 2021. 1. 28. : 경기도 신청(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2021. 2. 19. :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선정
- 2021. 5. ~ :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황병록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혜란	전화	2218
-----	--------	-------------	-----	------------	----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P - 11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가정폭력 상담소 내담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가정폭력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심리적·육체적 트라우마 극복 및 사회복귀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22,201	147,227	126,382	20,845	25,026	
국 비	61,101	73,614	63,191	10,423	12,513	
도 비	30,550	36,807	31,596	5,211	6,257	
시 비	30,550	36,806	31,595	5,211	6,256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가정폭력 상담소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근거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전문 상담을 통한 정신적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공 통	합 계		20,845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상담원) 추가 인건비 =	20,84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4. : 가정폭력 상담소 인력 추가배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2020년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2021년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6,158	116,158		0	
2020년	122,201	122,201		0	
2021년	126,382	33,022		93,36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이연화	담당자	행정8급 전예란	전화	5583
-----	-------	------------	-----	----------	----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P - 11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월 ~ 10월
- 사업규모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5,900	14,310	0	14,310	-1,590	
국 비	11,130	10,017	0	10,017	-1,113	
도 비	2,385	2,146	0	2,146	-239	
시 비	2,385	2,147	0	2,147	-238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2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근거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뿐 아니라 보호시설에 함께 입소한 동반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 필요 전문 상담과 심신의 안정·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자존감 회복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복귀 도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공 통		합 계 =	14,31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307-05 민간위탁금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개별상담 100,000원 × 7명 × 5회 = 3,500 - 집단상담 200,000원(전문강사Ⅲ) × 25회 = 5,000 150,000원(전문강사Ⅱ) × 6회 = 900 50,000원(보조강사Ⅰ) × 6회 = 300 - 심신회복캠프 3,335,000원 × 1회 = 3,335 - 문화체험 125,000원 × 10회 = 1,250 - 재료비 25,000원 × 1회 = 2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4.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치료회복프로그램비 지원
- 2021. 4. ~ 10.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개별 및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개별상담 : 35회 (5명) / 집단상담: 32회 (41명) - 심신회복캠프 : 1회 (13명) / 문화체험 : 11회 (84명) - 동반자녀 심리치료 : 28회 (5명)	
2020년	- 개별상담 : 37회 (9명) / 집단상담 : 36회 (23명) - 심신회복캠프 : 1회 (11명) / 문화체험 : 11회 (61명)	
2021년	-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6,700	16,700	-	0	
2020년	15,900	15,900	-	0	
2021년	-	-		-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이연화	담당자	행정8급 전예란	전화	5583
-----	-------	------------	-----	----------	----	------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P - 11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양곡1로 56번길 3, 4층
- 사업규모 : 성폭력상담소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성폭력예방 및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심리적·육체적 트라우마 극복 및 사회복귀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19,710	123,816	123,817	-1	4,106	
국 비	-	-	-	-	-	
도 비	35,913	37,145	37,145	0	1,232	
시 비	83,797	86,671	86,672	-1	2,874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전문 상담을 통한 정신적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합 계 = -1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비품 및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원 = -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 : 성폭력상담소 1분기 운영비 지급
- 2021. 3. ~ 12.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2020년	-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2021년	-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0,000	29,628	-	372	
2020년	119,710	115,450	-	4,260	
2021년	123,817	62,534		61,283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이연화	담당자	행정8급 전예란	전화	5583
-----	-------	------------	-----	----------	----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P - 11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월 ~ 10월
- 사업규모 : 성폭력상담소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성폭력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6,355	5,360	0	5,360	-995	
국 비	4,400	3,752	0	3,752	-648	
도 비	977	804	0	804	-173	
시 비	978	804	0	804	-174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2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개별, 집단상담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것과 낮아진 자존감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피해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 2020년 동일 프로그램 운영 결과 여러 회차의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을 때 피해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기에 용이했다는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상담 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공 통		합 계 =	5,360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개별상담 100,000원 × 3회 × 3명 = 900 - 집단상담 250,000원(전문강사Ⅲ) × 2명 × 6회 = 3,000 80,000원(전문강사Ⅰ) × 12회 = 960 - 집단상담 재료비 20,000원 × 10회 = 200 - 다과비 5,000원 × 12회 × 5명 = 3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 4. :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치료회복프로그램비 지원
- 2021. 4. ~ 10.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개별 및 집단상담)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개별상담 : 2회 - 집단상담 : 20회 (타로, 미술, 애니어그램, 도예프로그램)	
2020년	- 개별상담 : 9회 (3명) - 집단상담 : 16회 (13명) (타로, 여성주의 의식함양, 애니어그램)	
2021년	-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019	4,957	-	62	
2020년	6,355	6,355	-	0	
2021년	-	-		-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이연화	담당자	행정8급 전예란	전화	5583
-----	-------	------------	-----	----------	----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등 운영) (P - 11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위원 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2,080	0	2,080	2,080	
국 비	-	-	-	-	-	
도 비	-	-	-	-	-	
시 비	0	2,080	0	2,080	2,080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참석 및 자문수당 예산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11조, 제13조
근거내용	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신청 시 규정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충 심의위원회 상정 및 개최
- 심의위원 참석 및 자문수당 예산 편성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공 통		합 계 =	2,080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1-01 사무관리비	· 참석수당 80,000원 × 3명 × 2회 = · 자문수당 100,000원 × 16시간 =	480 1,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3. ~ 12. : (사안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20년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1회 개최	
2021년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1회 개최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	940	-	-	
2021년	-	1,260		-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이연화	담당자	행정7급 이지인	전화	5582
-----	-------	------------	-----	----------	----	------

(아이돌봄지원) (P - 11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500여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의 복지증진,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410,354	2,557,922	2,543,584	14,338	147,568	
국 비	1,687,248	1,790,545	1,780,509	10,036	103,297	
도 비	361,553	383,688	381,537	2,151	22,135	
시 비	361,553	383,689	381,538	2,151	22,136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장내시에 따른 운영비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근거내용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가정의 양육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아이돌보미 채용을 통하여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아이돌봄지원	307-05 민간위탁금	합 계 =	14,338	
		· 아이돌봄지원 운영비 =	14,33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5. ~ 12. : 아이돌봄지원 사업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514가구 수요)	
2020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533가구 수요)	
2021년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301가구 수요)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12,755	1,806,207	-	206,548	
2020년	2,410,354	2,325,727	-	84,627	
2021년	2,543,584	974,220		1,569,364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8급 장재혁	전화	5605
-----	-------	-------------	-----	----------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디어시스템 조성) (P - 11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연면적 68㎡(교육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학습 환경이 열악한 취약가정 및 대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가정에게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와 복지 욕구 해소
- 위 치 :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39,200	0	39,200	39,200	
국 비	-	-	-	-	-	
도 비	-	-	-	-	-	
시 비	0	39,200	0	39,200	39,200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필요성 증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근거내용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계속사업□	신규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지 프로그램 제공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보 격차 최소화
- 맞벌이·맞돌봄, 자녀·노부모 돌봄 가정 등 대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가정에게 영상 콘텐츠 제공으로 참여율 확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39,200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미디어시스템 조성	401-01 시설비	· 미디어실 조성 =	22,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미디어시스템 장비 구입 = - 디지털캠코더 및 삼각대 1,600,000원 × 2대 3,200 - 스탠드조명, 소프트박스 1,390,000원 × 2대 2,780 - 음향장비(마이크, 스피커, 헤드폰) 1,920 - 기타장비(크로마키, PC, 책상, 모니터) 7,550 - 출력장비(55인치 TV, 웹캠) 1,750	17,200	

□ 사업 추진계획

- 2021. 5. : 미디어시스템 설치 및 기자재 구입
- 2021. 6. ~ : 미디어시스템 개소 및 운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장 한규리	담당자	복지7급 최철훈	전화	5604
-----	-------	-------------	-----	----------	----	------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 (P - 11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
- 사업규모 : 1개 동아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부모 등 양육자에게 자녀 양육, 부모 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례를 스스로 배우도록 부모 동아리 관리 및 지원

○ 위 치 : 관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1,000	0	1,000	1,000	
국 비	-	-	-	-	-	
도 비	0	1,000	0	1,000	1,000	
시 비	-	-	-	-	-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도비 내시에 따른 1개 동아리 운영비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
근거내용	제11조(지원)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8. 중앙 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유치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부모 간 정보 교류와 역량강화 활동으로 자녀 양육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활성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1,000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1개 동아리 운영 1,000,000원 =	1,000	

□ 사업 추진계획

- 2021. 5. ~ 11. : 사업추진 및 동아리 모니터링
- 2021. 11. ~ 12. : 사업 성과보고 및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장 한규리	담당자	복지7급 최철훈	전화	5604
-----	-------	-------------	-----	----------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P - 11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1,00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 한부모·미혼·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문화적인 생활 영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195,150	2,488,640	2,214,310	274,330	293,490	
국 비	1,756,120	1,990,912	1,771,448	219,464	234,792	
도 비	219,515	248,864	221,431	27,433	29,349	
시 비	219,515	248,864	221,431	27,433	29,349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내용	<p>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1.4.21.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필요
- 저소득 한부모·미혼·조손가족 등에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합 계	274,330	
		· 아동양육비 : 100,000원 × 315명 × 8월 =	252,000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한부모, 5세이하 아동 : 50,000원 × 12명 × 8월 =	4,800	
		- 만25~34세 이하 한부모, 5세이하 아동 : 100,000원 × 12명 × 8월 =	9,600	
		- 만25~34세 이하 한부모, 만6세~18세 미만 아동 : 50,000원 × 12명 × 8월 =	4,800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증가분 : 28,000원 × 112명 × 1회 =	3,13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5. ~ 12.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사업명	누적건수	집행액(천원)	
2019년	합 계	9,794건	1,930,82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9,607건	1,921,310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148건	7,400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39건	2,110	
	합 계	11,018건	2,169,877	
2020년	합 계	11,018건	2,169,87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0,793건	2,158,250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133건	6,650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92건	4,977	
	합 계	2,843건	562,680	
2021년	합 계	2,843건	562,68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804건	560,730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39건	1,950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	-	
	합 계	2,843건	562,680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969,588	1,930,820	-	38,768	
2020년	2,195,150	2,169,877	-	25,273	
2021년	2,214,310	562,680	-	1,651,63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8급 장재혁	전화	5605
-----	-------	-------------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P - 11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2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자립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4,340	32,600	25,540	7,060	8,260	
국 비	19,472	26,080	20,432	5,648	6,608	
도 비	2,434	3,260	2,554	706	826	
시 비	2,434	3,260	2,554	706	826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
근거내용	제17조의 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1.4.21.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필요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합 계	7,060	
		· 아동양육비 : 100,000원 × 9명 × 8월	7,06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5. ~ 12. : 청소년 한부모 자립 비용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사업명	누적건수	집행액(천원)	
	합 계	138건	20,600	
	아동양육비	136건	20,400	
	자립촉진수당	2건	200	
2020년	사업명	누적건수	집행액(천원)	
	합 계	124건	18,050	
	아동양육비	113건	16,950	
	자립촉진수당	11건	1,100	
2021년	사업명	누적건수	집행액(천원)	3.31일기준
	합 계	32건	4,650	
	아동양육비	29건	4,350	
	자립촉진수당	3건	300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5,740	20,600	-	5,140	
2020년	24,340	18,050	-	6,290	
2021년	25,540	4,650	-	20,89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8급 장재혁	전화	5605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국비)) (P - 11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다함께 돌봄센터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70,820	331,500	331,500	0	160,680	
국 비	85,410	165,750	165,750	0	80,340	
도 비	25,623	49,725	49,725	0	24,102	
시 비	59,787	116,025	116,025	0	56,238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예산통계목 변경(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07-05 민간위탁금)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내용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2020.11월	-	-	-	-	-	-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0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국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 센터장 : 2,220,000원 × 1명 × 3개소 × 7개월 = - 돌봄교사 : 1,100,000원 × 2명 × 3개소 × 7개월 =	-92,820 -46,620 -46,200	통계목 변경에 따른 예산삭감
	307-05 민간위탁금	·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 센터장 : 2,220,000원 × 1명 × 3개소 × 7개월 = - 돌봄교사 : 1,100,000원 × 2명 × 3개소 × 7개월 =	92,820 46,620 46,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 ~ 12. : 돌봄센터 운영(기존 5개소)
- 2021. 3. ~ 4. :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1. 4. ~ 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관선정
- 2021. 6. ~ : 돌봄센터 위탁운영(3개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돌봄센터 2개소 설치 및 운영	
2020년	- 돌봄센터 3개소 설치 및 운영(총 5개소)	
2021년	- 돌봄센터 5개소 설치 관련 주민동의 등 행정절차 진행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0,376	4,943	-	45,433	
2020년	170,820	127,661	-	43,159	
2021년	331,500	41,531	/	289,969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행정7급 이찬호	전화	5586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국비)) (P - 11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다함께 돌봄센터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1,700	22,500	22,500	0	10,800	
국 비	5,850	11,250	11,250	0	5,400	
도 비	-	-	-	-	-	
시 비	5,850	11,250	11,250	0	5,400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예산통계목 변경(201-02 공공운영비 → 307-05 민간위탁금)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내용	<p>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아동의 안전한 보호</p> <p>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p> <p>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p> <p>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p> <p>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p> <p>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p> <p>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0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국비)	201-02 공공운영비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 300,000원 × 3개소 × 7개월 =	-6,300	통계목 변경에 따른 예산삭감
	307-05 민간위탁금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 300,000원 × 3개소 × 7개월 =	6,3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 ~ 12. : 돌봄센터 운영(기존 5개소)
- 2021. 3. ~ 4. :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1. 4. ~ 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관선정
- 2021. 6. ~ : 돌봄센터 위탁운영(3개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돌봄센터 2개소 설치 및 운영	
2020년	- 돌봄센터 3개소 설치 및 운영(총 5개소)	
2021년	- 돌봄센터 5개소 설치 관련 주민동의 등 행정절차 진행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11,700	7,430	-	4,270	
2021년	22,500	4,182		18,318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행정7급 이찬호	전화	5586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 (P - 11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다함께 돌봄센터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53,720	92,400	92,988	-588	38,680	
국 비	-	-	-	-	-	
도 비	16,116	27,720	27,896	-176	11,604	
시 비	37,604	64,680	65,092	-412	27,076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다함께돌봄 인건비기준 확정에 따른 예산감액
-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예산통계목 변경(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07-05 민간위탁금)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내용	<p>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p> <p>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	-	-	-	-	-	-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		합 계 =	92,4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돌봄인력(기준) : 1,100,000원 × 1명 × 2개소 × 12개월 =	26,400	통계목 변경에 따른 예산삭감
		· 돌봄인력(신규) : 1,100,000원 × 1명 × 8개소 × 5개월 =	42,900	
		· 돌봄인력(신규) : 1,100,000원 × 1명 × 3개소 × 7개월 =	-23,100	
307-05 민간위탁금	· 돌봄인력(신규) : 1,100,000원 × 1명 × 3개소 × 7개월 =	23,1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 ~ 12. : 돌봄센터 운영(기존 5개소)
- 2021. 3. ~ 4. :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1. 4. ~ 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관선정
- 2021. 6. ~ : 돌봄센터 위탁운영(3개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돌봄센터 2개소 설치 및 운영	
2020년	- 돌봄센터 3개소 설치 및 운영(총 5개소)	
2021년	- 돌봄센터 5개소 설치관련 주민동의 등 행정절차 진행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53,720	28,566	-	25,154	
2021년	92,400	10,317		82,083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행정7급 이찬호	전화	5586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P - 11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다함께 돌봄센터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2,000	16,800	16,800	0	4,800	
국 비	-	-	-	-	-	
도 비	3,600	5,040	5,040	0	1,440	
시 비	8,400	11,760	11,760	0	3,360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예산통계목 변경(201-01 사무관리비 → 307-05 민간위탁금)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내용	<p>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아동의 안전한 보호</p> <p>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p> <p>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p> <p>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p> <p>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p> <p>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p> <p>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아동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0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프로그램 지원비 : 200,000원 × 3개소 × 7개월 =	-4,200	통계목 변경에 따른 예산삭감
	307-05 민간위탁금	· 프로그램 지원비 : 200,000원 × 3개소 × 7개월 =	4,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 ~ 12. : 돌봄센터 운영(기존 5개소)
- 2021. 3. ~ 4. :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1. 4. ~ 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관선정
- 2021. 6. ~ : 돌봄센터 위탁운영(3개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돌봄센터 2개소 설치 및 운영	
2020년	- 돌봄센터 3개소 설치 및 운영(총 5개소)	
2021년	- 돌봄센터 5개소 설치 관련 주민동의 등 행정절차 진행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12,000	3,176	-	8,824	
2021년	16,800	300		16,50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행정7급 이찬호	전화	5586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체)) (P - 11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다함께 돌봄센터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75,150	317,140	317,140	0	141,990	
국 비	-	-	-	-	-	
도 비	-	-	-	-	-	
시 비	175,150	317,140	317,140	0	141,990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예산통계목 변경(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 307-05 민간위탁금)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내용	<p>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아동의 안전한 보호</p> <p>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p> <p>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p> <p>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p> <p>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p> <p>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p> <p>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다함께돌봄 센터지원(자체)		총 계 =	0	
		합 계 =	-47,310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종사자 명절휴가비 - 센터장 : 500,000원 x 1회 x 3명 = - 돌봄교사 : 250,000원 x 1회 x 9명 =	-3,750 -1,500 -2,250	통계목 변경에 따른 예산삭감
	201-01 사무관리비	· 돌봄센터 사무관리비 1,500,000원 x 7개월 x 3개소 =	-31,500	
	201-02 공공운영비	· 돌봄센터 운영비 : 360,000원 x 7개월 x 3개소 = · 책임공제 1,500,000원 x 3개소 =	-7,560 -4,500	
		합 계	47,310	
	307-05 민간위탁금	· 종사자 명절휴가비 - 센터장 : 500,000원 x 1회 x 3명 = - 돌봄교사 : 250,000원 x 1회 x 9명 = · 돌봄센터 사무관리비 1,500,000원 x 7개월 x 3개소 = · 돌봄센터 운영비 : 360,000원 x 7개월 x 3개소 = · 돌봄센터 책임공제 1,500,000원 x 3개소 =	3,750 1,500 2,250 31,500 7,560 4,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 ~ 12. : 돌봄센터 운영(기존 5개소)
- 2021. 3. ~ 4. :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1. 4. ~ 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관선정
- 2021. 6 ~ : 돌봄센터 위탁운영(3개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돌봄센터 2개소 설치 및 운영	
2020년	- 돌봄센터 3개소 설치 및 운영(총 5개소)	
2021년	- 돌봄센터 5개소 설치 관련 주민동의 등 행정절차 진행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6,000	21,480	-	4,520	
2020년	195,150	174,390	-	20,760	
2021년	317,140	14,796		302,344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행정7급 이찬호	전화	5586
-----	-------	----------	-----	----------	----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환경개선) (P - 1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원활한 한국사회 적응지원 및 자립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50,000	0	50,000	50,000	
국 비	-	-	-	-	-	
도 비	-	-	-	-	-	
시 비	0	50,000	0	50,000	50,000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환경개선을 통한 휴게 · 대기 공간 조성 및 센터 운영 효율성 증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근거내용	제13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센터 이용자 휴게 공간 및 대기 공간 부재에 따른 공간 재배치를 통한 공간 조성 필요
-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및 센터 운영 효율성 증대를 통해 관내 거주 외국인 주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적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정착 지원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외국인주민지원 센터 환경개선		합 계 =	50,000	
	401-01 시설비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 : 50,000,000원 =	5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5. : 실시설계
- 2021. 6. : 착공
- 2021. 7. :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누수관련 환경개선 공사 (창호코킹 및 건물 외벽 보수공사)	
2020년	-	
2021년	-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1,900	19,111	-	2,789	
2020년	-	-	-	-	
2021년	-	-		-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8급 나승희	전화	5608
-----	-------	-------------	-----	----------	----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P - 1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한국어교육 3개 과정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 교육 실시로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4,500	24,500	25,000	-500	0	
국 비	12,250	12,250	12,500	-250	0	
도 비	1,838	1,837	1,875	-38	-1	
시 비	10,412	10,413	10,625	-212	1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운영비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근거내용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실력 향상 도모
- 정규 한국어교육 과정, 중도입국자녀 과정, 한국어 심화과정 등 수준별로 나눈 한국어 교실운영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307-05 민간위탁금	합 계 =	-500	
		· 사무용품비(복사용지, 토너 등) 200,000원 × 2개월 · 홍보용품 100,000원 =	-500	

□ 사업 추진계획

○ 2021. 5. ~ 12. : 한국어 교육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한국어교육 3개 과정 운영(90명 참여) - 교육시간: 400시간 운영	
2020년	- 한국어교육 3개 과정 운영(140명 참여) - 교육시간: 512시간 운영	
2021년	- 한국어교육 3개 과정 운영(60명 참여) - 교육시간: 42시간 운영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2,163	22,163	-	-	
2020년	24,500	22,409	-	2,091	
2021년	25,000	9,800		15,20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장 한규리	담당자	복지7급 최철훈	전화	5604
-----	-------	-------------	-----	----------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P - 1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족 상담·교육, 가족 문화행사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안정성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40,400	282,520	282,540	-20	42,120	
국 비	120,200	141,260	141,270	-10	21,060	
도 비	-	-	-	-	-	
시 비	120,200	141,260	141,270	-10	21,060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운영비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내용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 상담·교육, 가족문화행사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합 계 =	-20	
		· 출장 여비 20,000원 × 1회 =	-20	

□ 사업 추진계획

○ 2021. 5. ~ 12.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가족교육(1,236건), 가족상담(155건), 방문교육(95명), 언어발달(87명), 통번역 및 정보제공(1,995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987명), 문화체험 (813명), 캠페인2회 (500명)	
2020년	- 가족교육(1,201건), 가족상담(129건), 방문교육(91건), 언어발달(81명), 통번역 및 정보제공(1,912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772명), 문화체험 (773명)	
2021년	- 가족교육(241건), 가족상담(33건), 방문교육(24건), 언어발달(18명), 통번역 및 정보제공(381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151명), 문화체험 (82명)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42,184	212,917	-	29,267	
2020년	240,400	240,400	-	-	
2021년	282,540	76,890		205,65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장 한규리	담당자	복지7급 최철훈	전화	5604
-----	-------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P - 12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사업 지원으로 아동학대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0,347	75,794	74,589	1,205	5,447	
국 비	-	-	-	-	-	
도 비	-	-	-	-	-	
시 비	70,347	75,794	74,589	1,205	5,447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5조
근거내용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 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 운영에 따른 운영 부담금 편성

-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기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 2020. 9월말기준 김포·부천 아동인구수에 따른 부담금 반영(김포 101,172명 43.75%, 부천 130,075명 56.25%)

- 김포, 부천지역 아동학대의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에 관한 활동 실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1,205	
아동보호전문 기관 운영비 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 운영비 부담금 : 2,754,000원 × 1개소 × 43%(김포시 부담율) ≒	1,20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4. ~ 12. :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포시 부담금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아동인구수 대비 부담금 지급(83,838명, 2018.8월말 기준)	
2020년	- 아동인구수 대비 부담금 지급(87,988명, 2019.8월말 기준)	
2021년	- 아동인구수 대비 부담금 지급 예정(101,172명, 2020.9월말 기준)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4,516	64,516	-	-	
2020년	70,347	70,347	-	-	
2021년	74,589	-		74,589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우승모	전화	5592
-----	-------	----------	-----	------------	----	------

(아동수당 지급) (P - 12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4,629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1,281,200	41,336,000	39,319,000	2,017,000	54,800	
국 비	28,896,840	33,069,000	31,455,000	1,614,000	4,172,160	
도 비	3,715,308	3,720,240	3,538,710	181,530	4,932	
시 비	8,669,052	4,546,760	4,325,290	221,470	-4,122,292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증가(32,935명 → 34,629명) 및 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2,017,000	
아동수당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100,000원 × 1,694명 × 12개월	≒ 2,017,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5. ~ 12. :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34,002명 지급	
2020년	- 35,243명 지급	
2021년	- 35,439명 지급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7,110,503	36,963,500	-	147,003	-
2020년	41,281,200	41,017,600	-	263,600	-
2021년	39,319,000	10,705,900		28,613,10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행정9급 고현아	전화	5529
-----	-------	----------	-----	----------	----	------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사업) (P - 12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청 본관 4층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학대 상담 및 조사 공간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아동학대 업무 수행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20,000	0	20,000	20,000	
국 비	0	10,000	0	10,000	10,000	
도 비	-	-	-	-	-	
시 비	0	10,000	0	10,000	10,000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추진에 따른 상담조사 시설 구축비용 및 자산취득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2호
근거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 아동학대 행위자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사고 예방을 위해 CCTV가 설치된 안전한 조사 공간과 적절한 상담환경 조성 필요
-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의 신변보호와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질 높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용 상담 공간이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20,000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사업	401-01 시설비	· 리모델링 공사 : 14,800,000원 × 1개소 · CCTV 설치 공사 : 1,200,000원 × 1개소 =	16,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상담조사실 가구 등 물품 구입 : 4,000,000원 × 1개소 =	4,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5. :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설치 계획 수립
- 2021. 5. ~ 7. :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우승모	전화	5592
-----	-------	----------	-----	------------	----	------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P - 1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보호업무의 통합적 지원으로 보호결정 전문성 강화 및 위기아동 적극 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20,000	0	20,000	20,000	
국 비	0	16,000	0	16,000	16,000	
도 비	0	600	0	600	600	
시 비	0	3,400	0	3,400	3,400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기본 운영비 및 서비스 운영비) 신규반영
※ 전담요원 1인당 10,000천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법.시행령,시행규칙)	제15조
근거내용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	-	-	-	-	-	-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호신용품 등 안전 및 예방에 관한 비용과 양육상황 점검 시 가정방문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지원 필요
- 보호조치 결정전 아동의 장애인단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등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비용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계	=	20,000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기본운영비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500,000원 × 5회 =	2,5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서비스운영비 · 서비스연계·제공비 350,000원 × 10회 · 가정방문등물품구입비 4,000,000원 · 기타지월비 500,000원 × 4회 =	9,500	
	307-01 의료및구료비	- 의료비 · 의료비(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400,000원 × 20명 =	8,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4. ~ 12. :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수행 및 피해아동 서비스 연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시간선택임기제 이한나 아동보호전담요원 박순형	전화	2830 5530
-----	-------	----------	-----	-----------------------------	----	--------------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P - 1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규모 : 위기아동(0~2세)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라 위기아동(0~2세) 가정위탁보호 기능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18,000	0	18,000	18,000	
국 비	0	12,600	0	12,600	12,600	
도 비	0	810	0	810	810	
시 비	0	4,590	0	4,590	4,590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2021. 3. 30.), 도 확정내시에 따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규 예산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법.시행령,시행규칙)	제15조
근거내용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위기아동(0~2세)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18,000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전문아동보호비 1,000,000원 × 2명 × 9개월 =	18,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3. ~ 12. :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른 위기아동(0~2세) 가정위탁보호 진행 및 사업추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이한나	전화	2830
-----	-------	----------	-----	-------------------	----	------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P - 1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사업규모 : 위기아동(0~2세)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라 위기아동(0~2세) 가정위탁보호 기능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2,000	0	2,000	2,000	
국 비	0	1,400	0	1,400	1,400	
도 비	0	90	0	90	90	
시 비	0	510	0	510	510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2021. 3. 30.), 도 확정내시에 따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예산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법.시행령,시행규칙)	제15조
근거내용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위기아동(0~2세)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2,000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 × 2회 =	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3. ~ 12. :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른 위기아동(0~2세) 가정위탁보호 진행 및 사업추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이한나	전화	2830
-----	-------	----------	-----	-------------------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P - 1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45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으로 건전한 성장 도모
- 예산요구 현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186,440	1,288,320	1,265,040	23,280	101,880	
국 비	593,220	644,160	632,520	11,640	50,940	
도 비	88,980	96,624	94,878	1,746	7,644	
시 비	504,240	547,536	537,642	9,894	43,296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7,240	0	27,240	-27,240	-27,240	
국 비	13,620	0	13,620	-13,620	-13,620	
도 비	2,043	0	2,043	-2,043	-2,043	
시 비	11,577	0	11,577	-11,577	-11,577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0	5,768	-5,768	0	
국 비	0	0	2,884	-2,884	0	
도 비	0	0	433	-433	0	
시 비	0	0	2,451	-2,451	0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내 공기청정기지원 및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사업 통합 및 예산 조정액 반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세부사업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개 사업 → 1개 사업 통합
통계목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변동없음
1회 추경 예산 요구액	감 33,008천원	증 23,280천원	차액분 9,728천원 : 도 확정내시에 의한 조정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통합편성 내시에 따른 공기청정기 및 안심알림이 이용료 지원 사업 예산 반영
- 아동보호, 교육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으로 아동돌봄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23,28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센터 29인 이하 : 1,200,000원 × 18개소 · 센터 30인 이상 : 1,680,000원 × 1개소	= 23,2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4. ~ 12. :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21. 4. ~ 12. : 분기별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도시 30인 이상 1개소, 읍면 29인 이하 4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읍면 19인 이하 6개소, 도시 19인 이하 4개소	
2020년	- 도시 30인 이상 1개소, 읍면 29인 이하 4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읍면 19인 이하 6개소, 도시 19인 이하 4개소	
2021년	- 도시 30인 이상 1개소, 읍면 29인 이하 4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읍면 19인 이하 6개소, 도시 19인 이하 4개소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16,967	1,103,351	-	13,616	
2020년	1,186,440	1,178,640	-	7,800	
2021년	1,265,040	322,007		943,033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우승모	전화	5592
-----	-------	----------	-----	------------	----	------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P - 1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그룹홈 4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59,929	363,264	267,489	95,775	103,335	
국 비	103,972	145,306	106,996	38,310	41,334	
도 비	23,394	32,694	24,074	8,620	9,300	
시 비	132,563	185,264	136,419	48,845	52,701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아동돌봄과-4923(2020.02.25.)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그룹홈은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시설로써,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여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합 계 =	95,775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 28,928,000원 × 3명 = · 인건비 증가분 : 551,000원 × 9명 = · 운영비 : 4,032,000원 × 1개소 =	86,784 4,959 4,03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 4. ~ 12. : 분기별 그룹홈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21. 4. ~ 12. : 보조금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그룹홈 3개소, 아동 16명 지원	-
2020년	- 그룹홈 3개소, 아동 18명 지원	
2021년	- 그룹홈 4개소, 아동 20명 지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49,329	207,238	-	42,091	-
2020년	259,929	212,505	-	47,424	-
2021년	267,489	53,150		214,339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보열	전화	5593
-----	-------	----------	-----	------------	----	------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P - 1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그룹홈 4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2,800	23,750	21,600	2,150	950	
국 비	-	-	-	-	-	
도 비	4,560	4,750	4,320	430	190	
시 비	18,240	19,000	17,280	1,720	760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아동돌봄과-8051(2020.04.02.)호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 경력 5년 이상 종사자 증가(6명 → 8명)에 따른 예산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연속성을 높여 업무 여건을 개선하여 시설 아동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함
- 5년 이상 종사자 : 월200,000원, 5년 미만 종사자 : 월150,000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합 계	2,150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50,000원 × 2명 × 5개월 · 150,000원 × 1명 × 7개월 · 200,000원 × 1명 × 3개월	= 500 = 1,050 = 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4. ~ 12. : 매월 25일 특수근무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종사자 7명 지원(5년 미만 : 2명, 5년 이상 : 5명)	-
2020년	- 종사자 10명 지원(5년 미만 : 4명, 5년 이상 : 6명)	
2021년	- 종사자 10명 지원(5년 미만 : 6명, 5년 이상 : 4명)	3.31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1,600	16,000	-	5,600	-
2020년	22,800	18,050	-	4,750	-
2021년	21,600	5,300		16,30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보열	전화	5593
-----	-------	----------	-----	------------	----	------

(그룹홈지원(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비)) (P - 123)

□ 지방보조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그룹홈 소풍 등 4개소 대표자 : 한희선 등 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응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500	5,500	2,500	3,000	3,000	
시 비	2,500	5,500	2,500	3,000	3,000	
자부담	-	-	-	-	-	

□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감사유

- 관내임시보호 아동 증가에 따른 증액
- 21. 3. 30. 부로 시행 예정인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에 따른 수요 증가 대비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학대피해아동의 임시보호시설인 그룹홈에 식비 및 의복비 등의 지원(일 30,000원)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관리 강화에 필요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공 통	계		3,000	
그룹홈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30,000원 x 14일 x 7명 =	3,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학대피해아동 1명 지원	
2020년	- 학대피해아동 4명 지원	
2021년	- 학대피해아동 7명 지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500	630	0	1,870	
2020년	2,500	2,500	0	0	
2021년	2,500	2,250		25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보열	전화	5593
-----	-------	----------	-----	------------	----	------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P - 1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관내 그룹홈 4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200	6,900	6,000	900	-300	
국 비	-	-	-	-	-	
도 비	7,200	6,900	6,000	900	-300	
시 비	-	-	-	-	-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아동돌봄과-8054(2020.04.02.)호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 신규종사자 증가(10명 → 12명)에 따른 예산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연속성을 높여 업무 여건을 개선하여 시설 아동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합 계	900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50,000원 × 2명 × 9개월 =	9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4. ~ 12. : 매월 25일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종사자 7명 지원	-
2020년	- 종사자 10명 지원	
2021년	- 종사자 10명 지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800	4,400	-	400	-
2020년	7,200	6,400	-	800	-
2021년	6,000	1,500		4,50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보열	전화	5593
-----	-------	----------	-----	------------	----	------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 (P - 12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그룹홈 4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균등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1,278	41,641	40,448	1,193	363	
국 비	-	-	-	-	-	
도 비	8,256	8,328	8,090	238	72	
시 비	33,022	33,313	32,358	955	291	
기 타	-	-	-	-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아동돌봄과-6464(2020.03.16.)호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문화학습활동비(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체육복비 등)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아동의 전반적 성장을 도모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합 계 =	1,193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특별위로비 증액 : 8,000원× 4회 × 20명 = · 학습재료비 증액 : 6,000원× 12회 × 18명 ≒ · 체육복비 감액 : 150,000원 × 1회 × 5명 =	640 1,303 -7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4. ~ 12. : 분기별 그룹홈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21. 4. ~ 12. : 보조금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그룹홈 3개소, 아동 16명 지원	-
2020년	- 그룹홈 4개소, 아동 18명 지원	-
2021년	- 그룹홈 4개소, 아동 20명 지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6,200	24,936	-	11,264	-
2020년	41,278	26,517	-	14,761	-
2021년	40,448	13,078		27,37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보열	전화	5593
-----	-------	----------	-----	------------	----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P - 12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 및 토요일운영 시설에 추가지원으로 시설의 운영역량 제고

○ 예산요구 현황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58,388	0	58,388	58,388	
국 비	0	29,194	0	29,194	29,194	
도 비	0	4,379	0	4,379	4,379	
시 비	0	24,815	0	24,815	24,815	

<토요일운영 지원(지역아동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8,240	0	21,888	-21,888	-18,240	
국 비	9,120	0	10,944	-10,944	-9,120	
도 비	1,368	0	1,642	-1,642	-1,368	
시 비	7,752	0	9,302	-9,302	-7,752	

<특수목적형 지원(지역아동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4,604	0	36,500	-36,500	-44,604	
국 비	22,300	0	18,250	-18,250	-22,300	
도 비	3,345	0	2,737	-2,737	-3,345	
시 비	18,959	0	15,513	-15,513	-18,959	

□ 예산 증감사유

- 토요일운영 및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세부사업 통합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세부사업명	- 토요일운영 지원 - 특수목적형 지원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개 사업 → 1개 사업 통합
통계목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변동없음
1회 추경 예산 요구액	감 58,388천원	증 58,388천원	변동없음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다문화, 야간운영 및 토요일 운영)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편성
- 이용아동 중 토요일봄서비스 수요에 따른 토요일 운영 및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 특수아동 비율이 높은 센터에 추가 지원하여 시설 운영의 역량 제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58,388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토요일 운영비 : 304,000원 × 6개소 × 12월 = · 특수목적형 운영비 : 608,000원 × 5개소 × 12월 =	21,888 36,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4. ~ 12. :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21. 4. ~ 12. : 분기별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토요일운영 5개소 / 특수목적형 5개소 지원	
2020년	- 토요일운영 5개소 / 특수목적형 7개소 지원	
2021년	- 토요일운영 5개소 / 특수목적형 5개소 지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8,428	52,945	-	5,483	
2020년	62,844	42,598	-	20,246	
2021년	58,388	13,072		45,316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우승모	전화	5592
-----	-------	----------	-----	------------	----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P - 12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9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인력 추가 배치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0	230,280	0	230,280	230,280	
국 비	0	115,140	0	115,140	115,140	
도 비	0	17,271	0	17,271	17,271	
시 비	0	97,869	0	97,869	97,869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내시에 따른 센터별 돌봄인력(19명) 추가 배치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근거내용	제5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종사자 감염시 추가인력으로 돌봄공백을 방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 아동보호, 교육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 아동돌봄 수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230,280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인건비 보조금 : 2,020,000원×19명×6월	= 230,2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7. ~ 12. :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21. 7. ~ 12. : 정산보고 및 확인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여성가족과	아동팀장 김수희	담당자	사회복지7급 우승모	전화	5592
-----	-------	----------	-----	------------	----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보 육 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P - 1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김포한강1로 77-39(장기동)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서비스 운영으로 육아정보 교류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한 다양한 육아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78,561	954,501	764,501	190,000	175,940	
국 비						
도 비						
시 비	778,561	954,501	764,501	190,000	175,94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크린넷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근거법령	김포시 보육 조례	제11조
근거내용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크린넷 설치를 통해 시설 유지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합 계 =	190,000	
		· 크린넷 설치 공사		
		- 투입구 및 흡입구 등 배관설치공사비 =	157,620	
		- 전기 및 자동제어공사 =	32,3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2021.05 크린넷 설치공사 착공
- 2021.07 크린넷 설치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어린이집지원사업 : 표준보육과정교육 2회/67명, 보육컨설팅 186회, 보육교직원교육 20회/495명 등 -가정양육지원사업 : 도서관 4,539명 이용, 맘카페 711명 가입, 장난감대여소 932명 가입 등	
2020년	-어린이집지원사업 : 보육컨설팅 65회, 보육교직원교육 30회/ 950명 등 -가정양육지원사업 : 도서관 437명 이용, 맘카페 44명 가입, 장난감대여소 161명 가입 등	
2021년	-어린이집지원사업 : 표준보육과정 4회/157명, 보육컨설팅 40회, 보육교직원교육 20회/349명 등 -가정양육지원사업 : 도서관(놀이키트) 200명, 맘카페(놀이키트) 480명, 장난감대여소 44명 가입 등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05,488	693,396		12,092	
2020년	778,561	710,415		68,146	
2021년	764,501	385,358		379,142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정책팀장 강남수	담당자	시설9급 조진희	전화	4106
-----	-----	------------	-----	----------	----	------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인건비 지원) (P - 1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도점검·평가제 기본사항 및 확인·평가제 컨설팅을 보육컨설팅으로 일원화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58,400	62,310	60,480	1,830	3,910	
국 비						
도 비	29,200	31,155	30,240	915	1,955	
시 비	29,200	31,155	30,240	915	1,95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컨설턴트 호봉제 반영에 따른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
근거내용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사 포함) 2. 휴일보육·방과 후 보육·취업여성 등 자녀 보육지원 사업비 3.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4.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관련된 비용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평가제 관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평가 이전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의 고충 해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보육컨설팅」 인건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컨설턴트 인건비 : 1,830,000원×1명 =	1,83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2021.02. : 추진계획수립
- 2021.03. ~ 2021.12. : 사업집행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전문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 1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52,874천원 지원	
2020년	전문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 1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49,405천원 지원	
2021년	전문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 1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31,155천원 지원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4,000	52,874		1,126	
2020년	58,400	49,405		8,994	
2021년	60,480	31,155		29,325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시설팀장 조환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이나리	전화	4115
-----	-----	------------	-----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 (P - 1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 ~ 2022. 4월 ○ 위치 : 김포한강1로 77-39(장기동 1910-3) 및 장기동 1910-1
- 사업규모 : 1개소(기존 3층 → 5층), 증축면적 703.06㎡, 도시관리계획 변경(주차장 확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센터 증축으로 육아서비스 확대 제공 및 센터 활성화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940,000	950,000	700,000	250,000	10,000	
국 비						
도 비						
시 비	940,000	950,000	700,000	250,000	1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도시계획심의회 및 건축협의 관련 부서의견 결과 반영 및 추가 설비 도입을 위한 공사비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근거법령	김포시 보육 조례	제11조
근거내용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	반영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2019.11월	2019.8월	2019.3월	2019.3월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도시계획 심의회 및 건축협의 부서의견 반영을 위한 조경시설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공사비 반영
- 어린이전용극장 무대조명장치 및 주차장 관제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부족 공사비 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육아종합 지원센터 증축	401-01 시설비	합 계	250,000	
		· 장애인편의시설	10,000	
		· 조경공사(옥상층)	21,000	
		· 방화셔터(4층) : 7,000,000원*2개	14,000	
		· 어린이극장 무대조명장치(5층) 설치	179,000	
		· 주차장관제시스템 설치	26,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3,050,802	2,100,802	950,000	700,000	250,000		
공 정 별	설계비	119,962					
	용역비	63,680					
	공사비	2,867,160	1,917,160	950,000	700,000	250,000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3.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 2019.05.~2019.06. : 수직증축 구조안전 진단용역 완료
- 2019.08.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20.02.~2020.12. : 기본·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 2020.11. : 건축협의를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
- 2021.03. : 증축공사(건축·소방·전기·통신) 착공
- 2021.05. :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착공
- 2022.04. : 증축공사 준공 및 개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03.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 2019.05.~2019.06. : 건물안전진단 용역 완료 - 2019.08.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2020년	- 2020.02.~12. : 기본·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 2020.11. : 건축협의를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	
2021년	- 2021.2. : 설계안전성검토 완료 - 2021.3. : 증축공사(건축, 소방, 전기, 통신 등) 착공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60,802	13,500	1,147,302		
2020년	2,087,302	128,012	1,959,290		
2021년	2,659,290	448,920		2,210,37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정책팀장 강남수	담당자	시설9급 조진희	전화	4106
-----	-----	------------	-----	----------	----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 (P - 1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지도사 및 장애위험영유아 전문상담사를 1명씩 배치하여 관내 부모 및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놀이지도 및 장애위험영유아 상담 등 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0,000	81,654	90,000	-8,346	41,654	
국 비						
도 비	20,000	40,827	45,000	-4,173	20,827	
시 비	20,000	40,827	45,000	-4,173	20,827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도비 예산 변경 반영 및 장애위험 영유아 전문상담사·놀이지도사 배치운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
근거내용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놀이지도사 배치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 기능강화 및 아이사랑 놀이터 운영 활성화 제고
- 자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 및 콘텐츠 지원
- 장애위험영유아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한 어린이집 현장의 장애위험영유아 선별 및 지원연계, 보육 교직원 교육 및 상담진행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시군 육아종합 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	307-05 민간위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내시 : 90,000천원 - 놀이지도사 : 40,000천원 x 1명 = 40,000천원 - 장애위험 상담지원 : 50,000천원 x 1명 = 50,000천원 • 변경내시 : 81,654천원 - 놀이지도사 : 40,000천원 x 1명 = 40,000천원 - 장애위험 상담지원 : 41,654천원 x 1명 = 41,654천원 * 채용기간('21.1~2월)제외한 10개월분 사업비 	= -8,34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2. : 놀이지도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장애위험 상담지원인력 채용
- 2021.03.~2021.12. : 놀이지도사 및 장애위험영유아 전문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9월 놀이지도사 공개채용 - 10~12월 놀이지도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020년	- 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 43회 / 594명	
2021년	- 2월 놀이지도사 및 장애위험영유아 상담지원인력 공개채용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000	20,000	-	-	
2020년	40,000	40,000	-	-	
2021년	90,000	20,413		69,587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정책팀장 강남수	담당자	복지7급 최명신	전화	4104
-----	-----	------------	-----	----------	----	------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P - 12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48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8,496,250	7,653,322	8,831,958	-1,178,636	-842,928	
국 비	4,248,124	4,591,993	4,415,978	176,015	343,869	
도 비	2,124,063	2,142,930	2,207,990	-65,060	18,867	
시 비	2,124,063	918,399	2,207,990	-1,289,591	-1,205,66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 변경 반영 및 국공립법인 교직원 480명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양질의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에 인건비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구분	원장	담임교사				취사부 (평가인증 또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1명)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원액	보수월액 80%	보수월액 80%	보수월액 30%	보수월액 100%		
		합 계					=	-1,178,636
		· 원장	: 12명 × 약 3,000,000원 × 12월				=	432,000
		· 영아반 교사	: 19명 × 약 2,000,000원 × 12월				=	456,000
· 그 외	: 13명 × 약 1,900,000원 × 12월				=	296,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월평균
	지원인원	297	70	367	
2020년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월평균
	지원인원	340	68	408	
2021년	구 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합계	3.31일기준
	지원인원	381	67	448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311,800	7,144,737	-	167,063	
2020년	8,496,250	8,432,294	-	63,956	
2021년	8,831,958	2,527,287		6,304,671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4109
-----	-----	------------	-----	------------	----	------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P - 12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1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아전담, 시간연장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232,822	3,053,245	3,185,316	-132,071	-179,577	
국 비	1,616,411	1,831,947	1,592,658	239,289	215,536	
도 비	808,206	854,909	796,329	58,580	46,703	
시 비	808,206	366,389	796,329	-429,940	-441,817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변경 반영 및 영아전담 등 교직원 210명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취약보육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어린이집 등에 인건비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지원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원장</th> <th colspan="2">담임교사</th> <th colspan="3">야간연장교사</th> <th rowspan="2">취사부</th> </tr> <tr> <th>영아반</th> <th>유아반</th> <th colspan="2">월급여형</th> <th>수당형</th> </tr> <tr> <th>지원 액</th> <th>보수 월액 80%</th> <th>보수 월액 80%</th> <th>보수 월액 30%</th> <th>정부 지원 보수 월액 80%</th> <th>민간</th> <th>1472 천원</th> <th>461 천원</th> <th>보수 월액 100%</th> </tr> </thead> </table>	구분	원장	담임교사		야간연장교사			취사부	영아반	유아반	월급여형		수당형	지원 액	보수 월액 80%	보수 월액 80%	보수 월액 30%	정부 지원 보수 월액 80%	민간	1472 천원	461 천원	보수 월액 100%		
		구분			원장	담임교사		야간연장교사			취사부															
			영아반	유아반		월급여형		수당형																		
지원 액	보수 월액 80%	보수 월액 80%	보수 월액 30%	정부 지원 보수 월액 80%	민간	1472 천원	461 천원	보수 월액 100%																		
합	계	≒	-132,071																							
		장애아통합 1개소×약5,759,000원×12월 = 69,108 정부지원야간연장교사 1명×약2,100,000원×12월 = 25,200 민간 야간연장교사 2명×약1,343,000원×12월 = 32,232 수당형 야간연장교사 1명×약445,000원×12월 = 5,3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구분	합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인원	127	49	19	8	51	
2020년	구분	합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인원	131	48	18	9	56	
2021년	구분	합계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야간연장 어린이집	3.31일기준
	지원인원	118	49	18	10	41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863,800	2,784,218	-	79,582	
2020년	3,232,822	3,112,247	-	120,575	
2021년	3,185,316	808,321		2,376,995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정	전화	4110
-----	-----	------------	-----	------------	----	------

(대체교사 인건비) (P - 12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3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재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의 항상성 유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982,808	993,840	1,174,946	-181,106	11,032	
국 비	491,404	596,304	587,473	8,831	104,900	
도 비	245,702	278,275	293,737	-15,462	32,573	
시 비	245,702	119,261	293,736	-174,475	-126,441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변경 반영 및 대체교사 36명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경조사, 연가, 병가 등의 사용에 따른 보육공백 최소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대체교사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지원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내용 : 대체교사 인건비		
		합 계	=	-181,106
		·인건비 : 2,271,000원 × 4명 × 12개월 ·운영비(사업비의 5%)	=	109,008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대체교사 인건비 분기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 25명 인건비 월 2,178천원/인
	합계	1,155		
	연 가	841		
	직무승급교육	14		
	병 가	145		
	본인결혼	21		
2020년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 30명 인건비 월 2,243천원/인
	합계	940		
	연 가	649		
	직무승급교육	14		
	병 가	149		
	본인결혼	22		
2021년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 32명 인건비 월 2,271천원/인
	합계	256		
	연 가	148		
	직무승급교육	0		
	병 가	42		
	본인결혼	0		
	기 타	66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60,000	658,960	-	1,040	
2020년	982,808	809,597	-	173,211	
2021년	1,174,946	317,007		857,939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4108
-----	-----	------------	-----	------------	----	------

(보조교사 인건비) (P - 12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58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의 항상성 유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6,861,848	7,325,738	8,339,070	-1,013,332	463,890	
국 비	3,430,924	4,395,443	4,169,535	225,908	964,519	
도 비	1,715,462	2,051,207	2,084,768	-33,561	335,745	
시 비	1,715,462	879,088	2,084,767	-1,205,679	-836,37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변경 반영 및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583명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 업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보조교사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지원대상 : 영아/장애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내용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합 계	=	-1,013,332
		·인건비 : 1,011,000원 × 79명 × 12개월 = 958,428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55,350원 × 79명 × 12개월 = 52,472 (인건비×17.95%×30%)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2. : 2021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선정
- 2021.01.~2021.12.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전체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70%이상 - 월 평균 320명, 973천원/인	
2020년	· 전체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 월 평균 350명, 1,056천원/인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월 평균 255명, 1,056천원/인	
2021년	· 전체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50%이상 - 월 평균 310명, 1,067천원/인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월 평균 185명, 1,067천원/인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197,656	3,600,891	-	596,765	
2020년	6,861,848	6,720,360	-	141,488	
2021년	8,339,070	1,659,875		6,679,195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4108
-----	-----	------------	-----	------------	----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P - 12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46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632,400	545,207	595,782	-50,575	-87,193	
국 비	316,200	327,124	297,891	29,233	10,924	
도 비	158,100	152,658	148,946	3,712	-5,442	
시 비	158,100	65,425	148,945	-83,520	-92,67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 변경 반영 및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464명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도시지역에 비해 보육시설 및 근로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 지원내용 : 월 110천원/인		
		· 110,000원 × 38명 × 12개월	≒	-50,57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월평균
	농어촌 지역 반 담임 보육교사	월 110천원/인/월	445	
2020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3.31일기준
	농어촌 지역 반 담임 보육교사	월 110천원/인/월	407	
2021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3.31일기준
	농어촌 지역 반 담임 보육교사	월 110천원/인/월	454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48,660	546,260	-	2,400	
2020년	632,400	537,240	-	95,160	
2021년	595,782	99,990		495,792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4109
-----	-----	------------	-----	------------	----	------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 (P - 12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35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육취약지역에 대한 보육기회 확대를 통해 보육아동의 접근성 및 이동성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40,361	82,827	141,400	-58,573	-57,534	
국 비	70,180	49,696	70,700	-21,004	-20,484	
도 비	35,090	23,192	35,350	-12,158	-11,898	
시 비	35,091	9,939	35,350	-25,411	-25,152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 변경 반영 및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35대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통학이 어려운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을 통해 보육아동의 접근성 및 이동성 개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지원대상 :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및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연 2,400천원 지원		
		(288,000원*41대*12월)-(200,000원*35대*12월) =	-58,57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7. : 상반기 차량운영비 지원
- 2021.12. : 하반기 차량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총계	89,240천원	81	
	상반기 차량운영비	50,800천원	43	
	하반기 차량운영비	38,440천원	38	
2020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총계	136,800천원	81	
	상반기 차량운영비	68,200천원	40	
	하반기 차량운영비	68,600천원	41	
2021년	구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상반기 차량운영비 (7월) 지원 예정
	총계	-	-	
	상반기 차량운영비	-	-	
	하반기 차량운영비	-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9,240	89,240	-	-	
2020년	140,361	136,800	-	3,561	
2021년	141,400	-		141,40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4109
-----	-----	------------	-----	------------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P - 12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1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30,000	330,000	330,000	0	0	
국 비	165,000	198,000	165,000	33,000	33,000	
도 비	82,500	92,400	82,500	9,900	9,900	
시 비	82,500	39,600	82,500	-42,900	-42,9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국60%, 도28%, 시12%)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보다 전문적이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원대상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기준 : 운영비 : 교사 수, 아동현원 등 운영현황 반영하여 지원				
		구 분			단 가	기 준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40만원	종일반 1개소당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소당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국·도비 예산 비율 변경 반영 (국비50%,도비25%,시비25% → 국비60%,도비28%,시비12%)	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사업명	지원개소(월)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1	3월 1개소 지정취소로 12개소→11개소	
2020년	사업명	지원개소(월)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2	10월 1개소 신규지정으로 11개소→12개소	
2021년	사업명	지원개소(월)	비고	3.31일기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2	12개소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32,000	320,365	-	11,635	
2020년	330,000	320,250	-	9,750	
2021년	330,000	86,495		243,505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정	전화	4110
-----	-----	------------	-----	------------	----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P - 12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7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8,438	17,351	18,539	-1,188	-1,087	
국 비	9,219	10,411	9,270	1,141	1,192	
도 비	4,610	4,858	4,635	223	248	
시 비	4,609	2,082	4,634	-2,552	-2,527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 변경 반영 및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7개소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보육아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소재 법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지원대상 :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지원내용 :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지원 (200천원~280천원)		
		· 42,400원 × 7개소 × 4분기	≒	-1,18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2021.12. :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정원 정원충족율	지원금액(단위: 천원)					7개소/월	
		60인이하	61~80	81~100	101~120	121인 이상		
		60% 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2020년	정원 정원충족율	지원금액(단위: 천원)					7개소/월	
		60인이하	61~80	81~100	101~120	121인 이상		
		60% 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2021년	정원 정원충족율	지원금액(단위: 천원)					7개소/월	
		60인이하	61~80	81~100	101~120	121인 이상		
		60% 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7,991	17,991	-	-	
2020년	18,438	18,438	-	-	
2021년	18,539	5,110		13,429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4109
-----	-----	------------	-----	------------	----	------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P - 12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35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적절한 보육교재비 지원으로 변화하는 보육환경 대응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00,200	187,419	206,620	-19,201	-12,781	
국 비	100,100	112,452	103,310	9,142	12,352	
도 비	50,050	52,477	51,655	822	2,427	
시 비	50,050	22,490	51,655	-29,165	-27,56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 변경 반영 및 교재교구비 352개소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추어 어린이집이 우수한 교재·교구를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원대상 : 전년도말부터 운영한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기준 : 개소당 1,000천원/년 이내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하여 조정 지급하므로 지급액 변동 가능		
		평균 532,000원 × 36개소 =	-19,20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개소	
	평가인증시설, 현원 기준 차등 지원	개소당 연 435천원 ~ 연 755천원	234개소/연	
2020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개소	
	평가인증시설, 현원 기준 차등 지원	개소당 연 441천원 ~ 연 765천원	334개소/연	
2021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개소	3.31일기준
	평가인증시설, 현원 기준 차등 지원	개소당 연 441천원 ~ 연 765천원	0개소/연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86,813	181,790	-	5,023	
2020년	200,200	185,618	-	14,582	
2021년	206,620	-		206,62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정	전화	4110
-----	-----	------------	-----	------------	----	------

(누리과정 운영 지원) (P - 12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5,20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공통의 보육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1,598,999	21,408,648	17,674,874	3,733,774	-190,351	
국 비						
도 비	21,598,999	21,408,648	17,674,874	3,733,774	-190,351	
시 비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누리과정 지원 대상자 5,203명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근거내용	<p>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p> <p>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p> <p>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p>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공통의 보육환경 보장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6,053,285	16,052,625	-	660	
2020년	21,598,999	21,598,999	-	-	
2021년	17,674,874	4,564,361		13,110,513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4109
				사회복지8급 김효정		4110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P - 12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3,70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368,844	3,574,524	3,396,780	177,744	205,680	
국 비						
도 비	673,769	714,905	679,356	35,549	41,136	
시 비	2,695,075	2,859,619	2,717,424	142,195	164,54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누리차액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변경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근거내용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휴일보육·방과 후 보육·취업여성 등 자녀 보육지원 사업비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을 통하여 누리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 경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원대상 :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고,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3~5세 아동										
		○지원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민간어린이집 만 3세</th> <th>민간어린이집 만4~5세</th> <th>가정어린이집 만3~5세</th> </tr> </thead> <tbody> <tr> <td>월 지원액</td> <td>93,000원</td> <td>70,000원</td> <td>96,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민간어린이집 만 3세	민간어린이집 만4~5세	가정어린이집 만3~5세	월 지원액	93,000원	70,000원	96,000원		
		구분	민간어린이집 만 3세	민간어린이집 만4~5세	가정어린이집 만3~5세							
월 지원액	93,000원	70,000원	96,000원									
합 계	=	177,744										
		·민간어린이집 만 3세 80명×93,000원×12월 = 89,280										
		·민간어린이집 만 4~5세 64명×70,000원×12월 = 53,760										
		·가정어린이집 만 3~5세 30명×96,000원×12월 = 34,56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정부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월 66천원 ~ 89천원/인	3,396명/월	
2020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정부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월 66천원 ~ 92천원/인	3,408명/월	
2021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3.31일기준
	정부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월 70천원 ~ 96천원/인	3,363명/월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145,000	3,145,000	-	-	
2020년	3,368,844	3,368,844	-	-	
2021년	3,396,780	800,000		2,596,78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정	전화	4110
-----	-----	------------	-----	------------	----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P - 13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긴급보육 또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개별적 보육수요에 부응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09,400	458,020	418,384	39,636	148,620	
국 비	154,700	229,010	209,192	19,818	74,310	
도 비	77,350	114,505	104,596	9,909	37,155	
시 비	77,350	114,505	104,596	9,909	37,15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 변경 반영 및 시간제보육기관 10개소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유동적인 시간제 보육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원대상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시설 ○지원내용 : -보육료 :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 3,000원, 본인부담금 1,000원) ○인건비 :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100% 민간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교사수당 : 18만원/월 ○운영비 : 32만원/월		
		합 계	=	39,636
		·보육료 : 600,000원 × 1개소 × 12월 = 7,200 ·인건비 : 약 2,200,000원 × 1개소 × 12월 = 26,400 ·교사수당 : 180,000원 × 1개소 × 12월 = 2,160 ·운영비 : 320,000원 × 1개소 × 12월 = 3,840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시간제 이용 아동	· 보육료 : 3,000원/시간 ※ 맞벌이여부 무관 동일 지원	435명/월	
	제공기관 운영 지원	· 인건비(봉급+4대보험+퇴직적립금) · 교사수당 : 180천원/월 · 운영비 : 320천원/월	6명, 6개반/월	
2020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시간제 이용 아동	· 보육료 : 3,000원/시간 ※ 맞벌이여부 무관 동일 지원	146명/월	
	제공기관 운영 지원	· 인건비(봉급+4대보험+퇴직적립금) · 교사수당 : 180천원/월 · 운영비 : 320천원/월	6명, 6개반/월	
2021년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인원	3.31일기준
	시간제 이용 아동	· 보육료 : 3,000원/시간 ※ 맞벌이여부 무관 동일 지원	0명/월	
	제공기관 운영 지원	· 인건비(봉급+4대보험+퇴직적립금) · 교사수당 : 180천원/월 · 운영비 : 320천원/월	4명, 4개반/월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73,760	273,760	-	-	
2020년	309,400	308,560	-	840	
2021년	418,384	71,980		346,404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정	전화	4110
-----	-----	------------	-----	------------	----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P - 13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5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36,300	25,000	36,300	-11,300	-11,300	
국 비	18,150	15,000	18,150	-3,150	-3,150	
도 비	9,075	7,000	9,075	-2,075	-2,075	
시 비	9,075	3,000	9,075	-6,075	-6,07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 변경 반영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비용 250명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승급 및 직무교육) 비용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보수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직무교육비 80,000원/인, 승급교육비 140,000원/인		
		합 계	=	-11,300
		· 승급교육 140,000원 × 40명 × 1회 · 직무교육 80,000원 × 71명 × 1회	=	5,600 5,6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2021.12. : 보수교육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총 계		188	
	직무교육비	60천원/인	56	
	승급교육비	120천원/인	132	
2020년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총 계		166	
	직무교육비	80천원/인	32	
	승급교육비	140천원/인	134	
2021년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3.31일기준 (12월집행 예정)
	총 계		1	
	직무교육비	80천원/인	-	
	승급교육비	140천원/인	1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8,000	18,000	-	-	
2020년	36,300	21,204	-	15,096	
2021년	36,300	140		36,16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4109
-----	-----	------------	-----	------------	----	------

(가정양육수당 지원) (P - 13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7,39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15,941,490	13,401,478	14,136,036	-734,558	-2,540,012	
국 비	10,361,968	10,051,109	9,188,424	862,685	-310,859	
도 비	2,789,761	2,345,258	2,473,806	-128,548	-444,503	
시 비	2,789,761	1,005,111	2,473,806	-1,468,695	-1,784,65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 변경 반영 및 가정양육아동 수당 7,394명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근거내용	제34조2(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내용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 ~ 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 ~ 23	150천원	177천원	
24 ~ 35	100천원	156천원	
36 ~ 47		129천원	100천원
48 ~ 83		100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0~5세 아동	
		○ 지원종류 -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합 계	= -734,558
		· 200,000원 × 102명 × 12개월	= 244,800
		· 150,000원 × 136명 × 12개월	= 244,800
		· 100,000원 × 204명 × 12개월	= 244,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2019년	0~11	200천원	200천원			
	12~23	150천원	177천원	200천원		
	24~35		156천원			
	36~47	100천원	129천원	100천원		
	48~83		100천원			
	지원연인원	98,059명	33명	368명	98,460명	
2020년	0~11	200천원	200천원			
	12~23	150천원	177천원	200천원		
	24~35		156천원			
	36~47	100천원	129천원	100천원		
	48~83		100천원			
	지원연인원	100,748명	72명	296명	101,116명	
2021년	0~11	200천원	200천원			
	12~23	150천원	177천원	200천원		
	24~35		156천원			
	36~47	100천원	129천원	100천원		
	48~83		100천원			
	지원연인원	32,054명	16명	66명	32,136명	3.31일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6,000,000	15,835,492	-	164,508	
2020년	15,941,490	15,784,707	-	156,783	
2021년	14,136,036	4,699,861		9,436,175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유은채	전화	4109
-----	-----	------------	-----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P - 13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7,525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62,416,450	57,409,343	57,350,485	58,858	-5,007,107	
국 비	40,570,692	43,057,007	37,277,815	5,779,192	2,486,315	
도 비	10,922,879	10,046,635	10,036,335	10,300	-876,244	
시 비	10,922,879	4,305,701	10,036,335	-5,730,634	-6,617,178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및 보육료 지원 아동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
근거내용	제34조(무상보육)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영유아의 보육기회 확대를 위한 보육료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지원내용 (단위 : 원/월)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기본보육시간) 보육료</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부모보육료</th> <th>기관보육료</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td> <td>484,000</td> <td>528,000</td> <td></td> </tr> <tr> <td>1세반</td> <td>426,000</td> <td>287,000</td> <td></td> </tr> <tr> <td>2세반</td> <td>353,000</td> <td>194,0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484,000	528,000		1세반	426,000	287,000		2세반	353,000	194,000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484,000	528,000																		
		1세반	426,000	287,000																		
2세반	353,000	194,000																				
합 계		≒	58,858																			
·만0세 : 1,012,000원 × 2명 × 12월		=	24,288																			
·만1세 : 713,000원 × 1명 × 12월		=	8,556																			
·만2세 : 547,000원 × 4명 × 12월		=	26,25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2021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본보육료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종일 454천원	400천원	331천원	11,669명/월	485천원	264천원	179천원	7,805명/월	
맞춤 354천원	311천원	258천원								
2020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470천원	414천원	343천원	9,163명/월	500천원	272천원	184천원	7,168명/월	
2021년	구분	영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3.31일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인원	0세	1세	2세	지원인원	
	지원액	484천원	426천원	353천원	8,947명/월	528천원	287천원	194천원	7,328명/월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0,238,212	60,237,356	-	856	
2020년	62,416,450	62,415,972	-	478	
2021년	57,350,485	19,919,018		37,431,467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효정	전화	4110
-----	-----	------------	-----	------------	----	------

(어린이집 환경개선) (P - 1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8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현원 21명 이상 ~ 49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신설에 따라 신규 의무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부담 경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72,372	81,517	30,000	51,517	9,145	
국 비	36,186	40,758	15,000	25,758	4,572	
도 비	18,093	20,379	7,500	12,879	2,286	
시 비	18,093	20,380	7,500	12,880	2,287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의무대상이 되는 현원 21명 이상~49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부담 경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현원 21명 이상~49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에 따라 냉동고 및 보존용기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소형냉동고 및 보존식 용기 : 636,000원 × 81개소	51,51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4. : 기본계획수립
- 2021.05. : 추진계획수립 및 검토
- 2021.06. : 사업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사업내용 : 어린이집 환경개선 (단위:원,개소)				
	사업명	집행액	지원개소수	비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80,400,000	3		
2020년	사업내용 : 어린이집 환경개선 (단위:원,개소)				
	사업명	집행액	지원개소수	비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72,372,000	3		
2021년	사업내용 : 어린이집 환경개선 (단위:원,개소)				3.31일기준
	사업명	집행액	지원개소수	비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0	0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0,400	80,400	-	0	
2020년	72,372	72,372	-	0	
2021년	30,000	0		30,00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시설팀장 조환민	담당자	행정8급 윤인식	전화	4114
-----	-----	------------	-----	----------	----	------

(담임교사 지원비) (P - 1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2,09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4,851,938	5,637,368	5,777,100	-139,732	785,430	
국 비	2,425,969	3,382,421	2,888,550	493,871	956,452	
도 비	1,212,985	1,578,463	1,444,275	134,188	365,478	
시 비	1,212,984	676,484	1,444,275	-767,791	-536,5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변경 반영 및 영아반 담당 담임교사 2,098명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지원을 통하여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담임교사지원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대상 : 영아반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내용 : 영아반 담임교사(월240,000원)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월120,000원) 담임교사지원비		
		합 계	≒	-139,732
		·담임교사 : 240,000원 × 30명 × 12개월 ·연장전담 : 120,000원 × 37명 × 12개월	=	86,400 53,2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담임교사지원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담임교사	월 220,000원	1,540명	
2020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담임교사	월 240,000원	1,450명	
	연장전담교사	월 120,000원	240명	
2021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3.31일기준
	담임교사	월 240,000원	1,590명	
	연장전담교사	월 120,000원	220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084,600	4,084,600	-	-	
2020년	4,851,938	4,630,040	-	221,898	
2021년	5,777,100	814,680		4,962,420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4108
-----	-----	------------	-----	------------	----	------

(교사 검직 원장 지원비) (P - 1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30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교사 검직 원장의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계	281,735	251,950	287,406	-35,456	-29,785	
국 비	140,868	151,170	143,703	7,467	10,302	
도 비	70,434	70,546	71,852	-1,306	112	
시 비	70,433	30,234	71,851	-41,617	-40,199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예산변경 반영 및 교사검직원장 308명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근거내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보육교사를 검직하고 있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대상 : 소규모 어린이집 담임교사 겸직하는 원장 ○지원내용 : 교사겸직원장 월75,000원 지원		
		·75,000원 × 39명 × 12개월 =	-35,45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12.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290명	
2020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290	
2021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3.31일기준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280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58,800	258,800	-	-	
2020년	281,735	244,038	-	37,697	
2021년	287,406	41,475		245,931	3.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송지연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4108
-----	-----	------------	-----	------------	----	------